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김 경 희	파견연도	2018
훈련분야	재무행정		
훈련과제	선진국(미국) 조세체계연구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방안 연구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관	Portland State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Service)		
보 고 내 용			
제 목	미국의 조세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방안 연구	보고서 매수	61
내용요약	<p>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2 인데 반해, 지출 비율은 4:6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 주요원인은 국가정책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p> <p>이는, 종전의 국가사무 특히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비용이 5년 전에 비해 45% 가량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3년도 6조 285억 →'17년도 8조 7,735억)</p> <p>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이고, 각 정부는 일정한 범위의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p> <p>이에,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중 오리건 주정부, 워싱턴 주 정부의 조세체계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방안, 조세자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p>		

미국의 조세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방안 연구

2019년 6월

김 경 희

□ 국외훈련(특별정책과정)개요

가. 훈련과제: 미국의 조세체계연구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방안 연구

나. 훈련기관: Portland State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Service)

다. 훈련개요

1)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프로그램**: 2018. 7.~8. 6주간 진행, 미국 생활 및 미국대학 적응을 위한 영어교육 및 미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미국 대학내 수업방식 등에 대한 교육

2) **세미나**: 2018. 9.~2019. 2. 미국 정부구조, 조세제도 등 주제관련 세미나

- 2018. 9. 미국정부구조, 오리건 주정부, 지방정부 구조 등 이해(Dan Vizzini)
- 2018. 9. 오리건주의 입법, 행정, 사법부 구조, 업무 등 설명(PSU, Phil Keisling)
- 2018. 10. 미국조세제도, 세목, 세원 등 설명(PSU, Dr. Kent Robinson)
- 2018. 10. 오리건주 글로벌 세일즈 현황 소개(오리건주 관광청, Greg Eckhart)
- 2019. 2. TSCC(조세 감독 위원회)의 연혁, 기능에 대한 설명(Mark Wubbold) 등

3) **현장방문(Site Visit)**

- 2018. 9. 오리건 주 댐, 상수원 방문, 설명(포틀랜드 물관리국 Tim Collins)
- 2018. 9. 레이크 오스위고 시청방문, 시청업무 설명(시직원 Scott Lazenby)
- 2018. 10. 오리건 정부청사, 대법원방문, 업무 설명(James Egan) 등
- 2018. 11.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선거 사무소방문, 업무설명(Catherine McMullen)

4) **EMPA수업**: 2018. 9.~12. 미국 행정의 역사, 전통, 리더쉽, 미래 등에 강의, 토론 수업(PSU, Dr. Douglas Morgan, Dr. Junghee Lee, 총6회 매회당 8시간, 총48시간)

5) **리서치(Research Session)**: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범위, 연구방법, 진행사항 등을 프로그램 담당자 및 직원 간 공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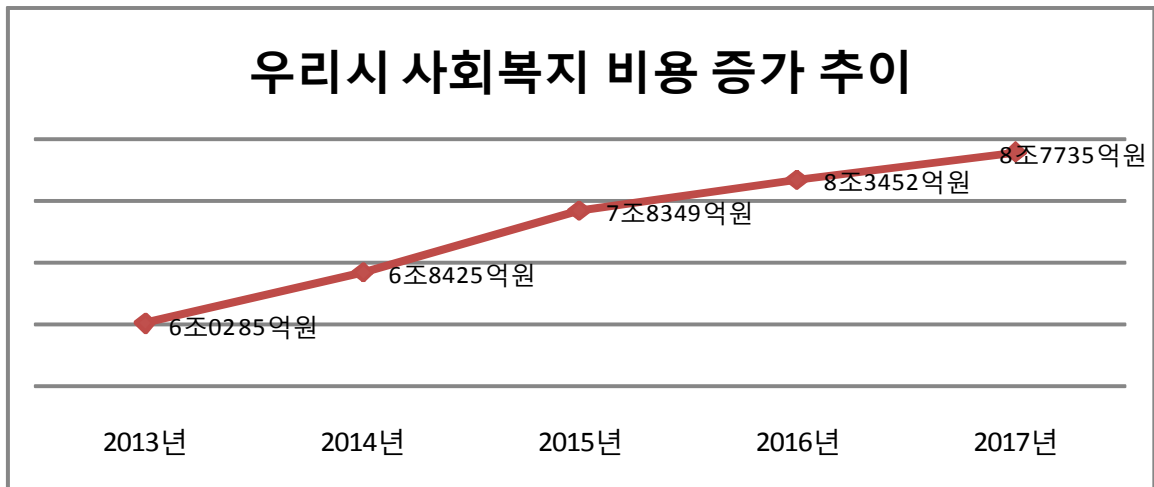
I. 서론	2
II. 미국의 지방세 제도	3
1. 미국의 국가형태	3
2. 미국의 조세체계	7
3. 오리건 주 조세제도	20
4. 워싱턴 주 조세제도	31
5. 연방정부 보조금(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40
III. 한국의 지방세 제도	48
1. 한국의 조세 제도	48
2. 서울시 조세 제도	53
IV. 결론 및 정책제언	57
참고문헌	60

미국의 조세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방안 연구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2 인데 반해, 지출 비율은 4:6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 주요원인은 국가정책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종전의 국가사무 특히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비용이 5년 전에 비해 45% 가량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3년도 6조 285억 → '17년도 8조7,735억)



그러나, 현행 조세체계하에서는 지방세 비중은 축소될 전망에 있어, 향후 지방세 확충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위한 필수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표> 지방세 비중 전망¹⁾

(단위 :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국세	79	80	80.9	81.7	82.6	83.4
지방세	21	20	19.1	18.3	17.4	16.6

1) 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분석

현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시기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결정권, 신세원 발굴 등 우리시 세원 확보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이고, 각 정부는 일정한 범위의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미국의 경우, 국세(연방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54.4:45.6 ('12년 기준)으로서, 지방정부(주정부포함)의 조세 비중이 오히려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79.0:2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조세제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II. 미국의 지방세 제도

1. 미국의 국가형태

가. 연방정부 구성

- 1) 연방행정부: 대통령이 행정수반이고 부통령과 함께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5개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운수부, 재무부, 보훈부)가 있음.
 -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연방세를 징수하고 국가 재정을 관리, 산하기관으로 미국 연방국세청, 미국 조폐국이 있음
- 2) 연방 의회: 상원, 하원 양원제로 구성(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1항)
 - 상원(Senate):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되어 총100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고 상원의원을 3개의 집단(class)으로 나누어 2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함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수가 정해지고 정원은 435명임.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주별로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함
 - 입법과정: 입법주기는 2년으로 회기(Session)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함, 우선 법률안이 제출되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보고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함(하원에서의 심의, 하원에서의 심의, 양원합동위원회),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을 이송하고 공포,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의 경우 먼저 하원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제기되어야 함,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음(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 1호)
- 3) 연방법원: 3단계 심급구조로 조직(제1심 연방지방법원, 항소심 연방항소법원, 최종심 연방대법원)
- 연방항소법원(총13개): 연방항소법원 11개(U.S. Court of Appeals for the 1st ~11th Circuit), 연방D.C.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
 - 연방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 94개 (U.S. District Court), 4개의 Territory 지방법원
- ※ 각 주는 연방법원과 별도의 법원조직을 가짐, 주 하급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주상급법원에서 상소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주 최고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연방법원에서 다투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만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다룰 수 있음

나. 주정부, 지방정부 구성

- 1) 주정부: 행정의 장은 주지사이며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대체로 4년(일부 주는 2년)임,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음
- 2) 지방정부

미국 전체 지방정부의 현황(2012년 기준)²⁾

합계	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계	광역 (카운티)	기초			계	특별구	교육구
			계	시티, 보로우, 타운, 빌리지	타운 또는 타운십			
90,056	38,910	3,031	35,879	19,519	16,360	51,146	38,266	12,880

- 보통지방자치단체: 카운티, Municipal governments(시티·보로우·타운·빌리지),
타운·타운십
 - 카운티(County): 주정부를 대신해서 광역행정업무를 수행, 미국의 48개 주정부에서 카운티를 운영,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법 집행, 선거, 기록 유지(토지 거래, 출생, 사망), 도로관리 업무를 하며, 최근에는 건강관련 사업, 병원관리, 쓰레기관리, 교통, 사회복지 등의 기능 수행,
 - ▶ 위원회형(commission form):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
 - ▶ 의회-임명행정관형(council-administratorform): 카운티의회가 전문행정인을 선임하여 인사, 예산, 행정부서 및 기관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
 - ▶ 의회-민선단체장형(council-elected executive form): 주민이 직접 카운티의장을 선출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
 - Municipal governments(시티·보로우·타운·빌리지)
 - ▶ 시티: 카운티와 비교하여 의사결정권한과 재량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카운티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 시티의 정부형태로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의회-관리자형(council-manager form), 시위원회형(city commission form), 주민총회형(town meeting form) 등이 있음

2) 출처: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community_facts.xhtml(19.3.21.방문)

- ▶ 보로우(Borough): 보통 시티보다는 인구가 작은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유형으로 동부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등 3개 주에 있고, 알래스카 주에서는 카운티를 보로우라고 함, 시티와 형태가 비슷함
 - ▶ 타운: Municipal 내에서의 타운은 타운, 타운십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에서 운용
 - ▶ 타운, 타운십(township): 주민총회형과 유사한 방식, 카운티 정부의 축소판처럼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짐.
 - ▶ 빌리지(village): 시티, 타운보다는 인구가 작은 지방정부를 보통 의미하지만, 주에 따라 시티, 타운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함
- 특별자치단체
- 특별구: 일정한 지역에 걸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선거구 단위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음
 - 교육구: 공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특별구로서 모든 지역은 반드시 하나의 교육구에 해당함, 주민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음

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계

- 1)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독자적 권력을 갖고, 독립적인 관계로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규정하는 연방정부 기능인 외교, 국방, 국제통상 등의 분야 이외에 연방주의 원칙 아래 주정부의 권한 행사의 독립성이 강하게 나타남(곽채기, 강혜규, 초의수, 2008, p. 25)
 - 연방정부는 미국연방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하여 위임된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주정부는 주헌법(State Constitution)에 따라 권한행사를 하며, 미국 연방헌법 수정안 제10조에 의거 연방정부에 위임되거나, 주정부에 위임이 금지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함
- 2)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지방정부는 주헌법 및 자치헌장(Charter)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정부와 지방정

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Dillon's Rule: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아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고 보는 주
- Home Rule(주민들에 의해 비준된 법): 지역주민들이 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헌장안을 만들고, 이를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다수(40개 넘는 주)가 홈룰을 주의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 오리건 주의 경우 홈룰이 매우 강한 주에 속함

2. 미국의 조세체계

가. 연방정부

1)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

- 2016년 연방 정부는 약 3.3조 달러의 세수를 올렸고, 이는 1인당 10,072달러에 달하는데, 연방 정부의 다수의 수입은 개인 소득세로 연방 정부 총 수입의 47.3% 를 차지함
- 2016년 적자 규모는 약 5,840억 달러로 지출이 수익을 초과함

• 2006~2016년 미국 연방정부 세수입액과 비중

(단위: 십억달러, billions of dollars, %)

년도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상속, 증여세		기타		총계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2016	1,546	47.31	1,115	34.12	299	9.17	95	2.91	19	0.65	191	5.84	3,268
2015	1,541	47.41	1,065	32.78	344	10.58	98	3.02	19	3.02	103	3.18	3,250
2014	1,395	46.16	1,024	33.87	321	10.61	93	3.09	19	0.64	170	5.63	3,022
2013	1,316	47.44	948	34.15	274	9.86	84	3.03	19	0.68	134	4.84	2,775
2012	1,132	46.21	845	34.50	242	9.89	79	3.23	14	0.57	137	5.60	2,450
2011	1,092	47.38	819	35.55	181	7.86	72	3.14	7	0.32	132	5.74	2,304

년도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상속, 증여세		기타		총계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2010	899	41.55	865	39.99	191	8.85	67	3.09	19	0.87	122	5.65	2,163
2009	915	43.48	891	42.32	138	6.57	63	2.97	24	1.12	75	3.54	2,105
2008	1,146	45.39	900	35.67	304	12.06	67	2.67	29	1.14	78	3.07	2,524
2007	1,164	45.31	870	33.86	370	14.42	65	2.54	26	1.01	74	2.86	2,568
2006	1,044	43.37	838	34.81	354	14.70	74	3.07	28	1.16	69	2.88	2,407

- 2016년 연방 정부는 약 3조9000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사회 보장에 투입되어 2016년 전체 연방 지출의 23.8%를 차지함, 사회 보장, 국방, 보건, 메디 케어 및 소득 보장으로 80%이상이 지출됨

• 2006~2016년 미국 연방정부 지출액과 비중

(단위: 십억달러, billions of dollars, %)

년도	국방		사회보장		건강		의료		소득보장		기타		총계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16	593	15.40	916	23.78	511	13.27	595	15.43	514	13.35	723	18.77	3,853
2015	590	15.98	888	24.07	482	13.07	546	14.81	509	13.8	674	18.27	3,688
2014	603	17.21	851	24.26	409	11.68	512	14.59	514	14.65	617	17.61	3,506
2013	633	18.34	814	23.55	358	10.37	498	14.41	537	15.53	615	17.8	3,455
2012	678	19.16	773	21.86	347	9.80	472	13.34	541	15.31	726	20.52	3,537
2011	706	19.58	731	20.28	373	10.34	486	13.48	597	16.58	711	19.74	3,603
2010	693	20.06	707	20.44	369	10.68	452	13.06	622	18.00	614	17.76	3,457
2009	661	18.79	683	19.42	334	9.50	430	12.23	533	15.16	876	24.9	3,518
2008	616	20.66	617	20.69	281	9.41	391	13.1	431	14.46	647	21.69	2,983
2007	551	20.2	586	21.48	266	9.76	375	13.76	366	13.41	584	21.38	2,729
2006	522	19.65	549	20.66	253	9.52	330	12.42	352	13.28	650	24.47	2,655

2) 연방세 근거규정 및 예산 수립과정

가)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 재무부 시행규칙(Regulation)에서 세부 사항규정

A. 소득세(Income Taxes, 섹션 1~1564)

B. 상속,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섹션 2001~2801)

C. 고용세(Employment Taxes, payroll taxes 섹션 3101~3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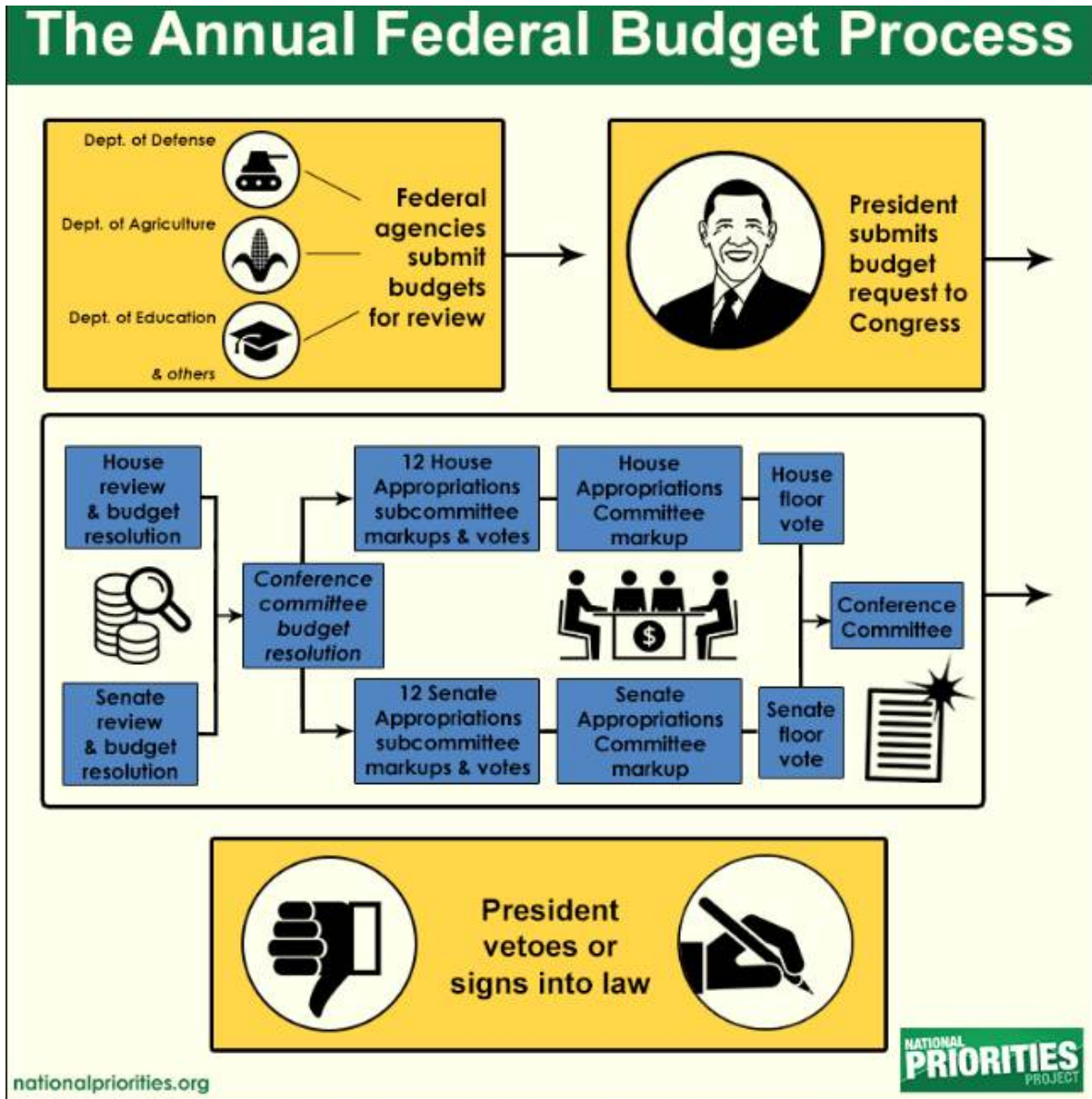
D. 기타 소비세(Miscellaneous Excise Taxes, 섹션 4001~5000)

E. 알코올, 담배 및 특정 기타 소비세(Alcohol, Tobacco, and Certain Other Excise Taxes, 섹션 5001~5891)

나) 예산수립과정

- 1단계: 매년 2월, 대통령, 연방기관의 요청이 반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회계주기: 10. 1. ~ 다음해 9. 30.)
- 2단계: 하원 예산위원회와 상원 예산위원회는 각자 예산결의안을 작성, 의결 (결의안: 연방 기관에 대한 연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지출액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자체 예산 결의안을 작성)
- 3단계: 상하원 소위원회의 세출예산안 초안, 승인", 하원과 상원의 세출위원회는 "예산 권한의 정확한 수준이나 모든 재량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허용"을 결정하는 세출 예산안을 초안하고 승인함, 세출 예산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특정 분야(예 : 국방 지출, 에너지 지출 등)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12개 분과위원회에 이 작업을 위임함, 세출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승인되어야 함
- 4단계: 합동회의위원회의 조정, 예산결의안과 세출예산안의 차이 조정을 위해 합동 회의위원회 소집, 하원과 상원은 조정된 안에 다시 투표하고, 양원에서 예산안을 모두 승인하면 법안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산안이 보내짐
- 5단계: 대통령이 12개 예산안에 서명, 법률화, 대통령은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의회는 2/3 다수결 투표로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예산수립 과정 도식3)



3) 연방세의 세목

가) 소득세(Income taxes): 연방정부 세입의 90%를 초과

- (1) 개인소득세: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가 부과(7개주는 부과하지 않음), 연방정부 수입의 40%를 초과하며, 주정부의 경우에도 주정부 전체수입의 약 1/3을 차지함, 주정부의 경우 1950년 개인 소득세의 비율은 9.3%에 불과

3) 출처: <https://www.nationalpriorities.org/budget-basics/federal-budget-101/federal-budget-process/>

했으나, 1970년 19%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3.5%로 증가함
 (가) 세율(2018년 기준): 누진세제, 현재 7개의 세율표가 있으며, 각각 10%에서
 37%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2017년까지는 10%에서 39.6%였음)
 - 미혼, 1인 가구

과세소득	세 율
\$ 0 ~ \$ 9,525	과세 소득의 10 %
\$ 9,526- \$ 38,700	\$952.50 + \$9,525 초과분의 12%
\$ 38,701- \$ 82,500	\$4,453.50 + \$38,700 초과분의 22%
\$ 82,501 ~ \$ 157,500	\$14,089.50 + \$82,500 초과분의 24%
\$ 157,501- \$ 200,000	\$32,089.50 + \$ 157,500 초과분의 32%
\$ 200,001- \$ 500,000	\$45,689.50 + \$200,000 초과분의 35 %
\$ 500,001 초과	\$150,689.50 + \$500,000 초과분의 37 %

- 부부합산

과세소득	세 율
\$ 0 ~ \$ 19,050	과세 소득의 10 %
\$ 19,051- \$ 77,400	\$1,905 + \$19,050 초과분의 12 %
\$ 77,401 ~ \$ 165,000	\$8,907 + \$77,400 초과분의 22 %
\$ 165,001- \$ 315,000	\$28,179 + \$165,000 초과분의 24 %
\$ 315,001- \$ 400,000	\$64,179 + \$315,000 초과분의 32 %
\$ 400,001- \$ 600,000	\$91,379 + \$400,000 초과분의 35 %
\$ 600,001 초과	\$161,379 + \$600,000 초과분의 37 %

(2) 법인소득세(corporate taxes):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의 영업 이익은 매출 원가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 2018년 현재 법인소득세 세율은 201%임,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부과(4개 주는 부과하지 않음), 연방정부 수입의 6% 미만을 차지함, 법인소득세로 징수되는 세액은 1977년 총 주정부 세금 징수액의 9.5%였으나 현재 약 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나)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상속 재산세를 "사망시 재산을 이전할 권리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 부동산, 현금, 사업 이익, 주식 및 기타 자산을 포함, 2015년 현재 과세 대상인 가치가 53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세금 부과 대상이며, 최대 세율은 40%임

다) 소비세(exercise taxes): 특정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대해 부과,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연료, 주류 및 담배와 같은 품목에 적용됨, 소비세는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경우 품목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함, 세금의 비용은 품목의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전가됨, 2010년에는 전체 연방세 수입의 10%가량을 차지함

나. 주정부와 지방정부

1) 2016년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⁴⁾

-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소득세, 판매세, 소비세 등이 주된 세원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재산세가 주된 세원임, 2016년 주정부는 총 약 9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렸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판매세로 주정부 세수의 약 47.6%를 차지함
- 판매세의 비중이 높은 주의 경우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경우 판매세의 비중이 낮은 경우가 많음

4) 출처: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State Expenditure Report (Fiscal 2015-2017)," 열람 2019.4.7

• 2016년 주정부, 지방정부의 자금의 세원별 세수입 및 비중⁵⁾

(단위: 백만달러, millions of dollars, %)

주명	재산세		판매세		소비세		소득세		기타		총계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United States	18,364	2.00	442,910	47.60	52,164	5.60	392,287	42.20	24,538	2.60	930,264
Alabama	346	3.50	5,106	51.50	507	5.10	3,870	39.00	90	0.90	9,920
Alaska	112	10.70	261	25.00	121	11.60	212	20.40	337	32.30	1,042
Arizona	943	6.40	8,680	59.10	482	3.30	4,538	30.90	33	0.20	14,676
Arkansas	1,120	11.80	4,590	48.60	397	4.20	3,232	34.20	114	1.20	9,453
California	2,513	1.60	53,366	34.40	8,551	5.50	90,656	58.40	145	0.10	155,231
Colorado	N/A	N/A	4,897	38.30	702	5.50	7,112	55.60	84	0.70	12,795
Connecticut	N/A	N/A	6,150	40.30	455	3.00	8,277	54.30	363	2.40	15,245
Delaware	N/A	N/A	539	15.30	1,453	41.20	1,431	40.60	100	2.80	3,522
Florida	0	0.00	30,429	80.80	2,241	6.00	2,272	6.00	2,697	7.20	37,640
Georgia	962	4.50	8,408	39.20	664	3.10	11,421	53.20	(272)	0.00	21,454
Hawaii	N/A	N/A	4,316	62.40	263	3.80	2,224	32.10	116	1.70	6,919
Idaho	N/A	N/A	2,121	50.40	373	8.90	1,710	40.60	5	0.10	4,210
Illinois	61	0.20	18,524	47.60	2,746	7.10	17,174	44.10	402	1.00	38,907
Indiana	11	0.10	10,608	60.30	715	4.10	6,253	35.60	2	0.00	17,588
Iowa	1	0.00	4,591	48.00	926	9.70	3,930	41.10	110	1.10	9,559
Kansas	664	8.20	4,325	53.70	397	4.90	2,624	32.60	50	0.60	8,059
Kentucky	578	4.90	5,603	47.60	505	4.30	4,889	41.50	204	1.70	11,779
Louisiana	62	0.70	5,353	57.50	400	4.30	3,038	32.60	456	4.90	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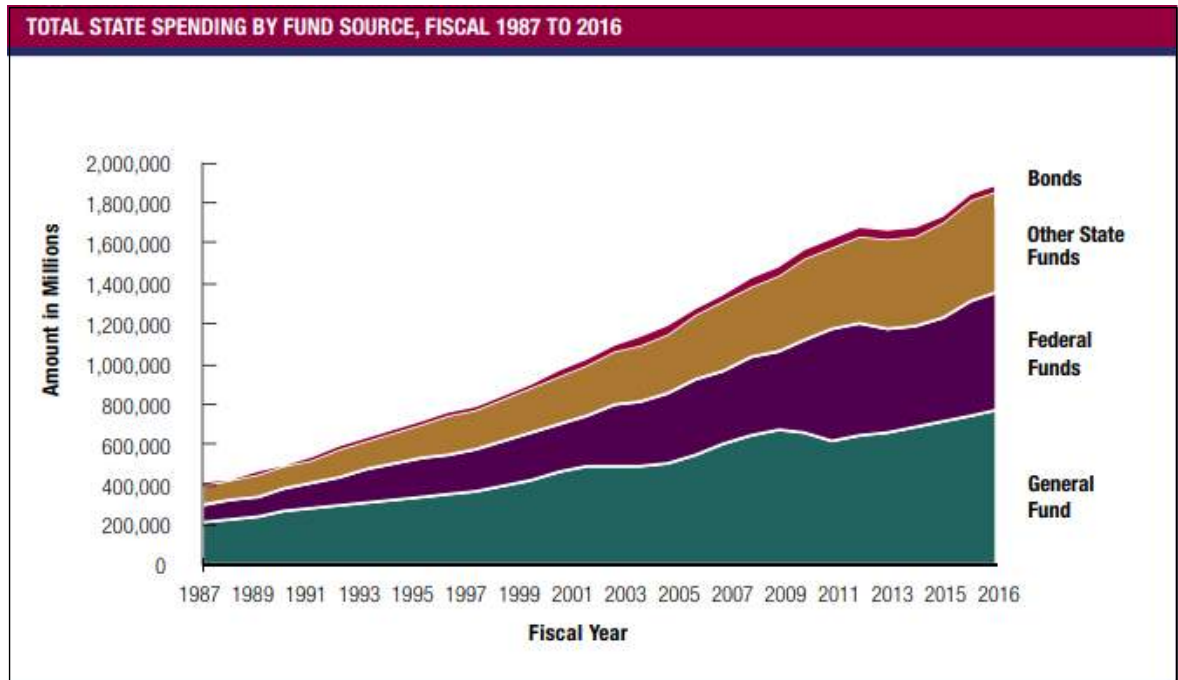
5)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State government tax collections by source, 2016," 방문 2019.4.8

주명	재산세		판매세		소비세		소득세		기타		총계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Maine	35	0.90	2,078	50.30	272	6.60	1,689	40.90	56	1.30	4,130
Maryland	748	3.60	8,939	42.80	884	4.20	9,647	46.20	675	3.20	20,894
Massachusetts	6	0.00	8,684	31.80	1,122	4.10	16,764	61.40	707	2.60	27,283
Michigan	2,034	7.40	13,239	48.30	1,661	6.10	10,202	37.20	301	1.10	27,437
Minnesota	850	3.40	10,121	40.20	1,426	5.70	12,248	48.60	544	2.20	25,189
Mississippi	27	0.30	4,778	62.40	554	7.20	2,263	29.50	39	0.50	7,660
Missouri	31	0.30	5,302	43.30	547	4.50	6,352	51.90	12	0.10	12,245
Montana	278	10.60	562	21.40	319	12.10	1,300	49.50	168	6.40	2,628
Nebraska	0	0.00	2,363	46.20	185	3.60	2,552	49.90	17	0.30	5,117
Nevada	280	3.50	6,348	79.10	651	8.10	N/A	N/A	746	9.30	8,025
New Hampshire	406	15.40	983	37.20	330	12.50	788	29.80	135	5.10	2,642
New Jersey	5	0.00	13,173	41.80	1,500	4.80	15,585	49.40	1,283	4.10	31,547
New Mexico	107	2.00	2,930	53.60	343	6.30	1,524	27.90	559	10.20	5,462
New York	N/A	N/A	24,790	30.50	1,795	2.20	50,690	62.30	4,079	5.00	81,354
North Carolina	N/A	N/A	11,149	42.60	1,869	7.10	13,109	50.00	74	0.30	26,202
North Dakota	4	0.10	1,497	40.40	204	5.50	454	12.20	1,550	41.80	3,709
Ohio	N/A	N/A	18,231	63.50	2,224	7.70	8,202	28.60	38	0.10	28,695
Oklahoma	N/A	N/A	3,778	44.50	1,039	12.20	3,325	39.20	349	4.10	8,491
Oregon	21	0.20	1,532	13.90	1,049	9.50	8,300	75.20	142	1.30	11,043
Pennsylvania	43	0.10	19,284	51.60	2,159	5.80	14,388	38.50	1,519	4.10	37,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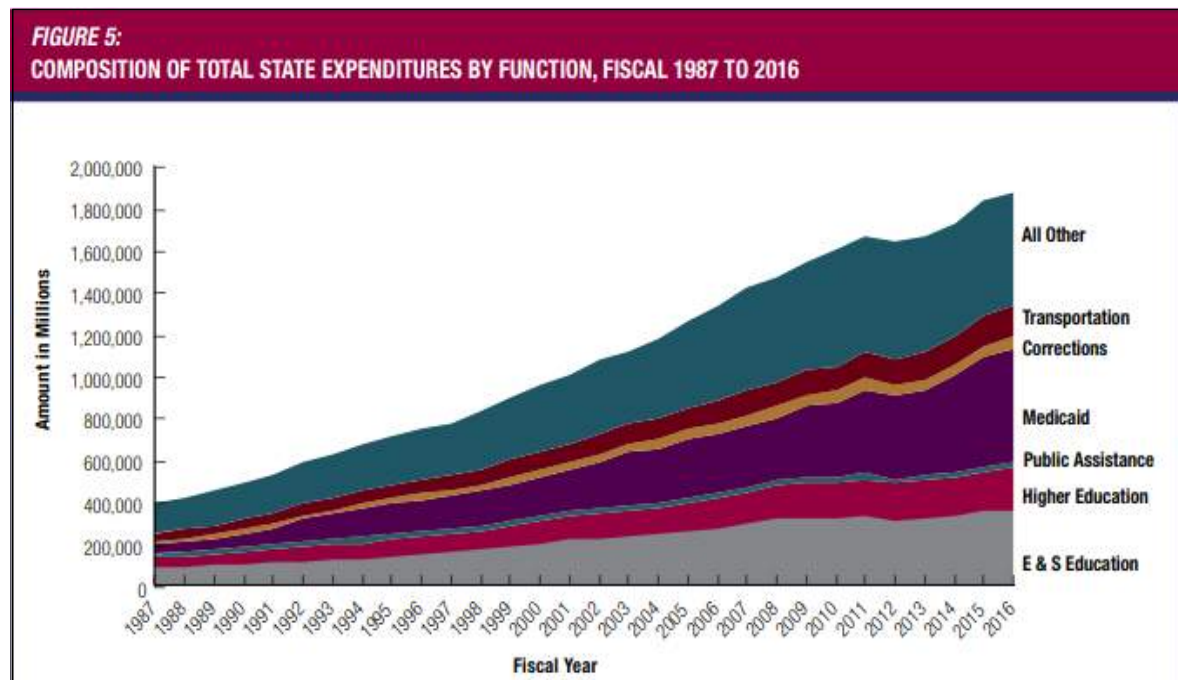
주명	재산세		판매세		소비세		소득세		기타		총계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Rhode Island	3	0.10	1,665	51.00	121	3.70	1,380	42.30	96	3.00	3,266
South Carolina	33	0.30	4,621	48.40	499	5.20	4,310	45.10	89	0.90	9,551
South Dakota	N/A	N/A	1,440	82.40	268	15.30	33	1.90	7	0.40	1,748
Tennessee	N/A	N/A	9,704	72.50	1,517	11.30	1,863	13.90	302	2.30	13,386
Texas	N/A	N/A	46,371	88.90	3,414	6.50	N/A	N/A	2,348	4.50	52,133
Utah	N/A	N/A	3,032	42.80	290	4.10	3,708	52.30	53	0.70	7,083
Vermont	1,056	34.20	1,031	33.40	117	3.80	828	26.80	53	1.70	3,086
Virginia	30	0.10	6,886	32.50	826	3.90	12,991	61.20	486	2.30	21,220
Washington	2,062	9.30	17,636	79.20	1,461	6.60	N/A	N/A	1,121	5.00	22,280
West Virginia	7	0.10	2,567	50.10	128	2.50	1,990	38.80	435	8.50	5,128
Wisconsin	171	1.00	7,722	43.90	1,152	6.50	8,473	48.10	90	0.50	17,608
Wyoming	339	17.70	820	42.90	157	8.20	N/A	N/A	598	31.20	1,914

- 2016년 주정부의 총 지출대비 주정부자금과 연방정부자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주정부자금이 약 70%, 연방정부자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연방정부 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침, 2007년, 2008년경에는 2%대의 상승을 보이다가 2009년에는 19.3%, 2010년에는 21.4%의 상승이 있었음, 이는 주로 미국경기회복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결과임, 이후 소폭의 상승, 하락을 거듭하였고, 2015년도에 10%가량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의료지원(mediaid)에 따른 것임

- 전체 주의 지출자금의 원천별 구분(1987년~2016년)⁶⁾



- 전체 주의 지출자금의 용도별 구분(1987년~2016년)



6) 출처:

https://higherlogicdownload.s3.amazonaws.com/NASBO/9d2d2db1-c943-4f1b-b750-0fca152d64c2/UploadedImages/SER%20Archive/State_Expenditure_Report_Fiscal_2015-2017_-S.pdf

• 2016년 주별 총지출대비 주정부자금과 연방정부자금액과 비중

(단위: 백만달러, millions of dollars, 명, %)

주명	주정부 자금		연방정부자금		총 지출	인구수	1인당지출 출처 (단위:달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labama	16,339	61.72	10,135	38.28	26,474	4,863,300	5,444
Alaska	7,300	68.85	3,302	31.15	10,602	741,894	14,290
Arizona	24,820	61.09	15,809	38.91	40,629	6,931,071	5,862
Arkansas	16,531	69.36	7,301	30.64	23,832	2,988,248	7,975
California	169,765	63.85	96,129	36.15	265,894	39,250,017	6,774
Colorado	26,517	73.65	9,486	26.35	36,003	5,540,545	6,498
Connecticut	24,964	80.31	6,122	19.69	31,086	3,576,452	8,692
Delaware	8,089	78.99	2,151	21.01	10,240	952,065	10,756
Florida	53,476	68.21	24,921	31.79	78,397	20,612,439	3,803
Georgia	34,102	71.80	13,394	28.20	47,496	10,310,371	4,607
Hawaii	11,272	81.47	2,563	18.53	13,835	1,428,557	9,685
Idaho	5,039	63.43	2,905	36.57	7,944	1,683,140	4,720
Illinois	39,168	69.97	16,810	30.03	55,978	12,801,539	4,373
Indiana	18,958	60.36	12,448	39.64	31,406	6,633,053	4,735
Iowa	16,345	72.02	6,349	27.98	22,694	3,134,693	7,240
Kansas	11,505	74.09	4,023	25.91	15,528	2,907,289	5,341
Kentucky	20,521	62.75	12,182	37.25	32,703	4,436,974	7,371
Louisiana	19,265	65.08	10,338	34.92	29,603	4,681,666	6,323
Maine	5,519	68.52	2,536	31.48	8,055	1,331,479	6,050
Maryland	29,634	71.96	11,549	28.04	41,183	6,016,447	6,845
Massachusetts	50,652	83.86	9,751	16.14	60,403	6,811,779	8,867
Michigan	31,944	58.43	22,728	41.57	54,672	9,928,300	5,507
Minnesota	26,715	69.92	11,494	30.08	38,209	5,519,952	6,922
Mississippi	12,728	57.03	9,592	42.97	22,320	2,988,726	7,468

주명	주정부 자금		연방정부자금		총 지출	인구수	1인당지출 출처 (단위:달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issouri	16,951	68.83	7,677	31.17	24,628	6,093,000	4,042
Montana	4,014	62.88	2,370	37.12	6,384	1,042,520	6,124
Nebraska	8,621	74.25	2,989	25.75	11,610	1,907,116	6,088
Nevada	7,543	65.44	3,984	34.56	11,527	2,940,058	3,921
New Hampshire	3,623	62.63	2,162	37.37	5,785	1,334,795	4,334
New Jersey	42,398	70.85	17,440	29.15	59,838	8,944,469	6,690
New Mexico	10,701	59.20	7,375	40.80	18,076	2,081,015	8,686
New York	101,232	67.17	49,476	32.83	150,708	19,745,289	7,633
North Carolina	31,360	70.68	13,007	29.32	44,367	10,146,788	4,373
North Dakota	6,275	77.91	1,779	22.09	8,054	757,952	10,626
Ohio	55,000	81.54	12,450	18.46	67,450	11,614,373	5,807
Oklahoma	15,063	66.30	7,656	33.70	22,719	3,923,561	5,790
Oregon	26,809	72.21	10,317	27.79	37,126	4,093,465	9,070
Pennsylvania	50,858	65.19	27,153	34.81	78,011	12,784,227	6,102
Rhode Island	6,597	68.28	3,065	31.72	9,662	1,056,426	9,146
South Carolina	15,364	66.59	7,710	33.41	23,074	4,961,119	4,651
South Dakota	2,686	66.32	1,364	33.68	4,050	865,454	4,680
Tennessee	20,156	61.17	12,793	38.83	32,949	6,651,194	4,954
Texas	82,327	64.68	44,956	35.32	127,283	27,862,596	4,568
Utah	9,892	72.17	3,815	27.83	13,707	3,051,217	4,492
Vermont	3,546	63.75	2,016	36.25	5,562	624,594	8,905
Virginia	39,251	79.86	9,901	20.14	49,152	8,411,808	5,843
Washington	29,744	72.10	11,507	27.90	41,251	7,288,000	5,660
West Virginia	12,832	79.35	3,340	20.65	16,172	1,831,102	8,832
Wisconsin	34,874	76.36	10,796	23.64	45,670	5,778,708	7,903

주명	주정부 자금		연방정부자금		총 지출	인구수	1인당지출 출처 (단위:달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Wyoming	6,583	83.42	1,308	16.58	7,891	585,501	13,477

2) 주정부세, 지방정부세의 세목: 각 주의 헌법과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정함

가) 판매세(Sales taxes): 주정부 세입의 약 47%를 차지함

- 2019년 현재 45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판매세 징수
- 38개의 주에서는 지역정부도 판매세 부과, 일부 경우 주의 판매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 주정부(지방정부 포함) 판매세 상위 5위 주는 테네시 주(9.47%), 루이지애나 주(9.45%), 알칸사스 주(9.43%), 워싱턴 주(9.17%), 알라바마 주(9.14%) 순임
- 판매세는 세수입을 징수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이해가 쉽고, 소비자는 영수증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오레건 주,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몬타나 주, 뉴햄프셔 5개 주의 경우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알래스카주는 지역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함

나) 개인소득세(Income taxes)

- 1980년대에 많은 주들이 연방 정부의 주도하에 개인 소득세를 줄였음, 2019년 현재 8개의 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로 부과,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및 와이오밍 주 등 7개 주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인 소득세는 임금, 급여,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주에서 부과됨,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하나 이상의 다른 주와 상호주의 협정을 맺어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자의 주에서 과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DC와의 메릴랜드의 상호주의 합의는 메릴랜드 주 주민이 DC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

다) 법인소득세(Cooperate taxes)

- 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4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부과, 일반세입에서 약 2~3%를 차지하는 데 그침

라) 재산세(Property taxes)

- 재산세는 주로 지방정부의 수입원이고, 주정부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재산세를 과세하는 곳은 36개주이고, 주정부는 과세하지 않고 지방정부만 과세하는 곳은 14개주임
- 2016년 회계연도 지방정부의 세금징수액의 72%를 차지하나 주정부 평균은 2%에 불과함, 평균 1인당 \$1,556 징수, 주별로 편차가 큼, 1인당 가장 높은 주 및 지방 재산세 징수액은 콜롬비아 특별구로 \$3,535였으며, 가장 낮은 주 및 징수액은 켄터키 주로 \$775였음⁷⁾
- 각 주는 주법에서 재산세 제도를 규정하여 50개 이상의 버전 및 매우 다른 시스템 및 절차를 가짐,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주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동산, 기계장비, 자동차, 이동식 건물 등에 대해서는 주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
- 재산세액 계산방법은 ① 시가에 바로 세율(백분위 또는 1,000달러에 얼마의 형태)로 계산하는 주, ② 시가에 세율 이외에 조정된 제2의 세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추가하는 주, ③ 시가 자체를 원가나 조정된 가액으로 대체하고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주 등이 있음
-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과세평가액(assessed value)은 재산세 평가관에 의해서 평가되고, 평가된 가액은 소유자에게 통지됨
- 재산 소유권자는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평가액은 대부분 별도의 위원회의 검토 후 평가가 완료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다양하고, 체납시 압류 및 매각 등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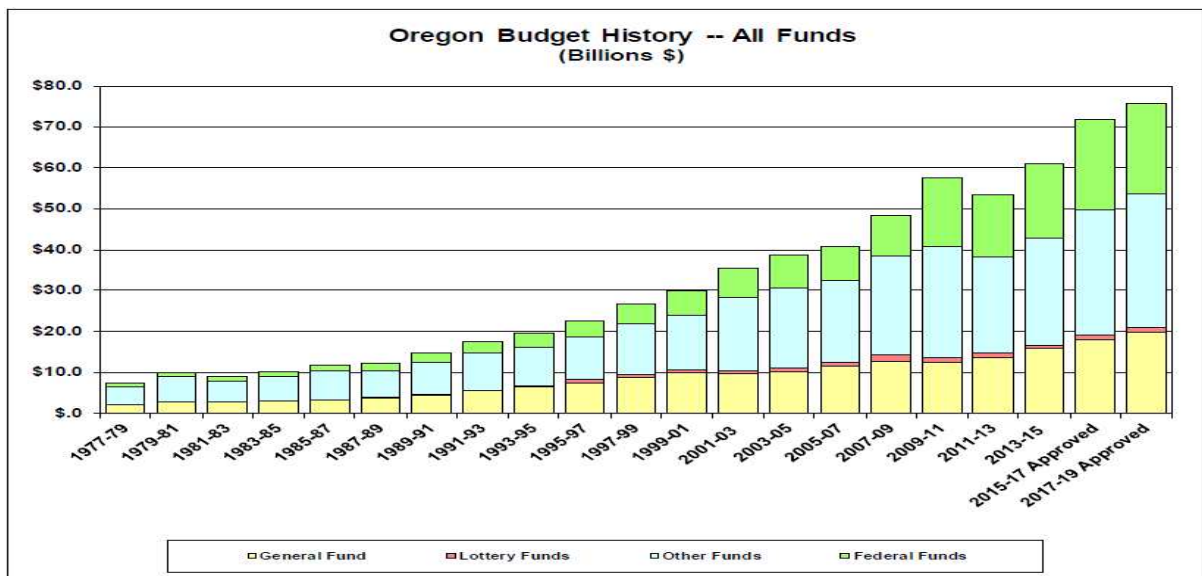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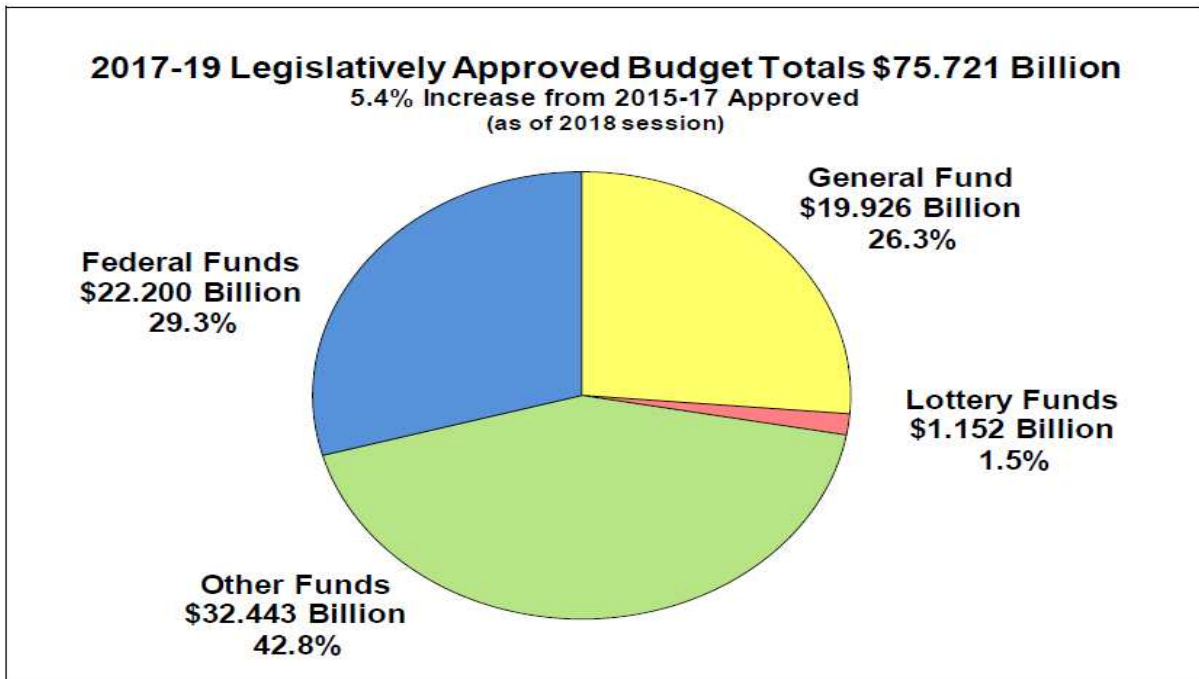
3. 오리건 주 조세제도

7) 출처 <https://www.census.gov/data/datasets/2016/econ/local/public-use-datasets.html>

가. 2017~2019 오리건 주 총 수입⁸⁾

1) 총 수입은 연방정부기금, 일반기금, 복권기금, 기타 기금으로 구성, 총 수입 750억 달러 중 연방정부기금은 총 수입의 29.3%에 해당하고, 일반기금과 복권기금은 27.8%, 기타 기금은 42.8%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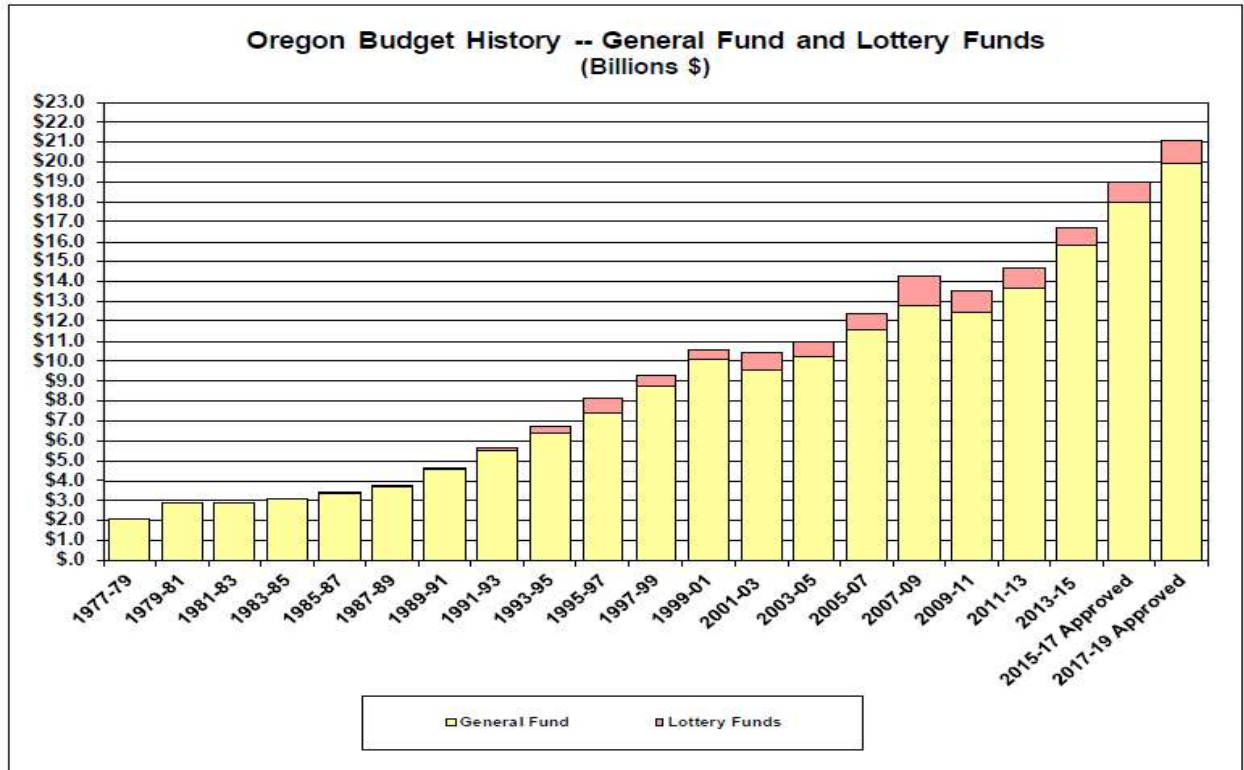
- 2017-2019 오리건 주 수입 구성



8) 출처 https://www.oregon.gov/das/Financial/Documents/2017-19_gb.pdf

2) 주정부의 일반 세입, 세출 구성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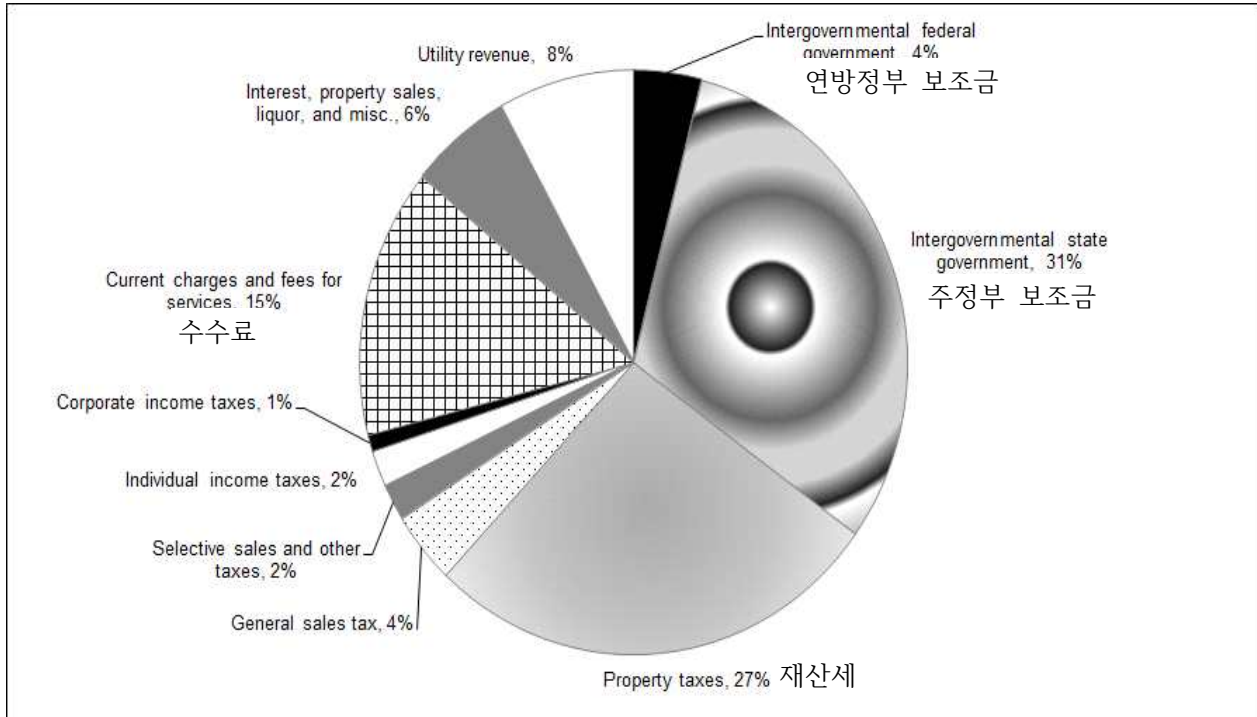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es \$17.5 billion (84%)	총 세입 (Total resources) \$20.8 billion (약 23조3천억)	총 세출 (Total spending) \$20.6 billion (약 23조9백억)	교육 Education \$10.7 billion (53%)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es \$1 billion (5%)			복지 Human Services \$5.4 billion (26%)
복권세 Lottery \$1 billion (5%)			공공안전 Public Safety/Judicial \$3.7 billion
All other taxes \$781 million (4%)			경제, 통신 Economic & Comm. Dev. \$235 million
부동산 양도, 증여세 Estate tax \$249 million (1%)			자원 Natural Resources \$429 million
담배세 Cigarette taxes \$165 million (<1%)			교통 Transportation \$173 million (<1%)
전년 잔액 Beginning balance \$64 million (<1%)			소비자, 산업서비스 Consumer & Business Services.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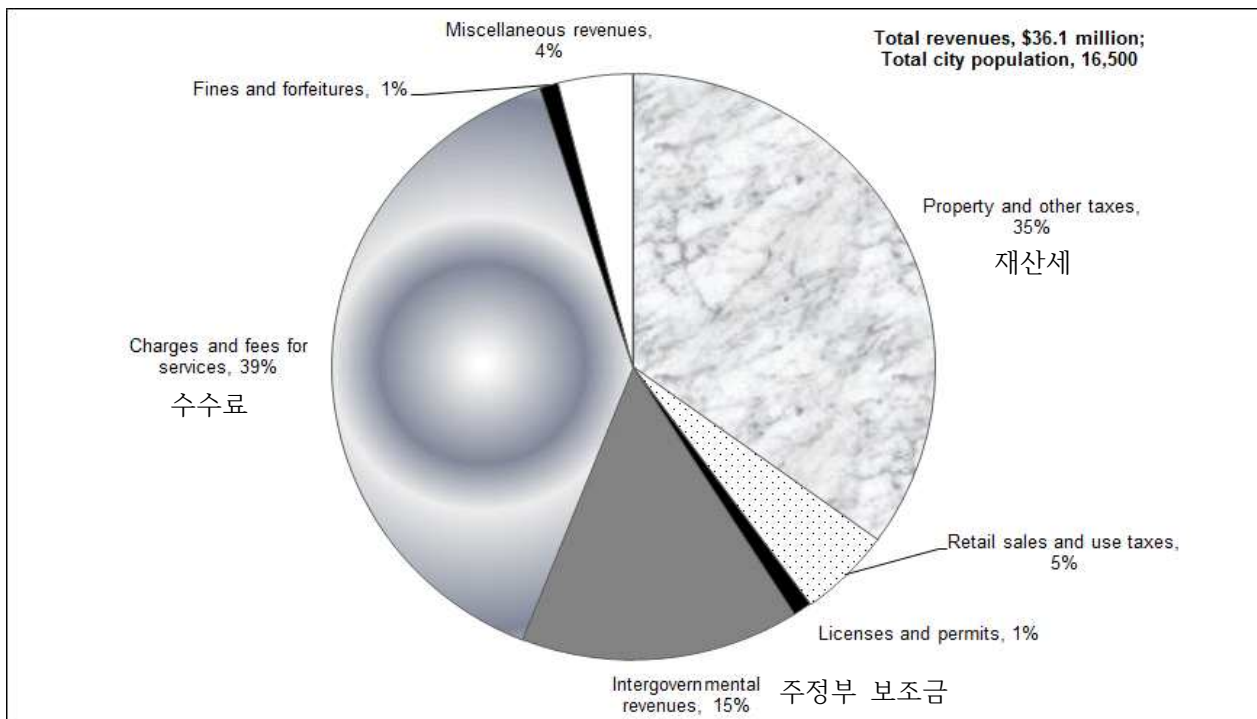
9) <https://www.oregonlegislature.gov/lfo/Documents/2017-19%20Budget%20Highlights%20Update.pdf>
 - 2017-19 BUDGET HIGHLIGHTS UPDATE (includes 2018 session actions), Legislative Fiscal Office March 2018

3) 지방정부의 수입원 비중

가) 카운티 등 지방정부



나) 시티, 타운 등(소규모 지방정부)



나. 오리건 주 조세관련 규정

1) 오리건 주 헌법(Oregon Constitution)

- 제32조 세금 및 관세: 과세의 통일성. 입법부의 국민이나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세금이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모든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당국의 영토 범위 내에서 동일한 부류의 과목에 대해 균일해야 한다. [헌법 1859; 1917년 HJR 16에 의해 제안되고 1917년 6월 4일에 국민들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

2) 오리건 주 법률(Laws of the State of Oregon)

- 제8장 제305조~제325조 (예산과 조세, 총19조)
 - 제305조 세무행정과 조세법, 소송 (Administration of Revenue and Tax Laws; Appeals)
 - 제306조 재산세 일반(Property Taxation Generally)
 - 제307조 과세대상 재산, 면제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Exemptions)
 - 제308조 과세재산평가(Assessment of Property for Taxation)
 - 제308조A 토지특별평가(Land Special Assessments)
 - 제309조 재산세 심판원(Board of Property Tax Appeals; Ratio Studies)
 - 제310조 재산세율 및 금액; 세금제한; 세금감면 프로그램(Property Tax Rates and Amounts; Tax Limitations; Tax Reduction Programs)
 - 제311조 재산세 징수(Collection of Property Taxes)
 - 제312조 재산세 부담금 압류(Foreclosure of Property Tax Liens)
 - 제314조 순이익에 의해 측정되거나 부과되는 세금(Taxes Imposed Upon or Measured by Net Income)
 - 제315조 개인, 법인 소득, 세금 공제(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or Excise Tax Credits)

- 제316조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제317조 법인유출세(Corporation Excise Tax)
- 제318조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
- 제319조 자동차, 항공기 연료세(Motor Vehicle and Aircraft Fuel Taxes)
- 제320조 기타세(Miscellaneous Taxes)
- 제321조 나무와 삼림세(Timber and Forestland Taxation)
- 제323조 담배와 담배제품(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 제324조 석유, 가스세(Oil and Gas Tax)

다. 오리건 주 세목

1) 개인소득세: 미국 전체 주정부의 전체 수입대비 평균적인 소득세 비중은 30% 정도인데 반해, 오리건 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경우만 일반세입의 80%(2017년, 170억 달러, 84%)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5%에서 9.9%까지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근 주들과 비교해볼 때 세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가) 미혼,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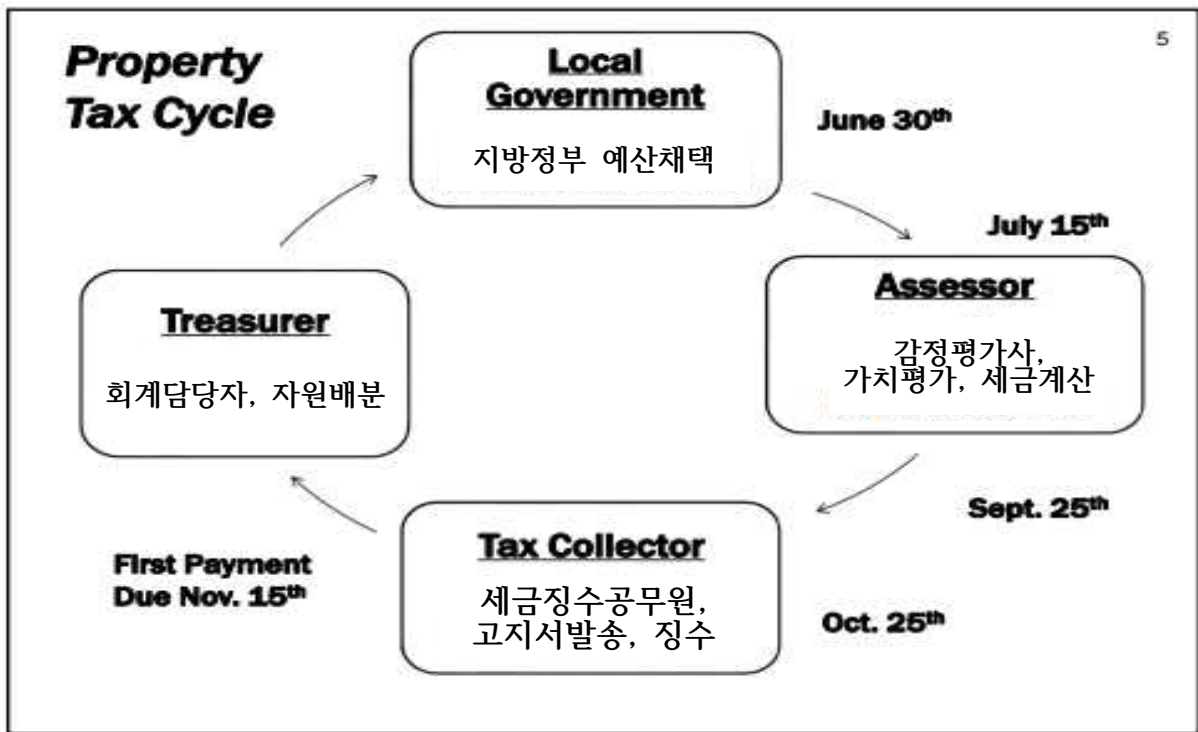
- \$50,000 ~ \$125,000 : \$4,257 + \$50,000 초과분의 9%
- \$125,000 초과 : \$11,007 + \$125,000 초과분의 9.9%

나) 기혼, 부양자녀를 둔 가정

- \$50,000 ~ \$250,000 : \$4,014 + \$50,000 초과분의 9%
- \$250,000 초과 : \$22,014 + \$250,000 초과분의 9.9%

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es): 오리건주는 주내, 주간, 외국간 거래와 관계 없이 주에 소재한 유무형 자산, 주에서 수행된 모든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과세, 소득이 1백만 달러 초과여부에 따라 세율은 6.60% ~ 7.60%임, 2017년 오리건 주는 법인세는 10억달러로, 일반세입의 5%정도임

- 3) 재산세(Property Tax):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된 수입원임, 2017~2018년 회계기간 동안 재산세 징수액은 6.76조 달러에 이릅니다¹⁰⁾, 오리건 주정부는 부과하지 않음, 모든 종류의 부동산(토지, 건물, 부착된 기계와 장비)과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나, 가정용 가구나 도구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소유물, 자동차 곡물, 과수원, 사업상의 재고, 주식이나 채권은 행구좌와 같은 무형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교용 부동산, 농지, 숲,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 및 참전용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공제됨
- 재산세 부과, 징수 사이클



가) 재산세 평가방법

- 감정평가(Assessment):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감정, 평가하고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각 카운티의 재산 감정평가사(assessor)에 의해서 처리되며, 재산 감정평가사는 재산, 사업, 부동산, 장비에 대해 실질가치를 평가(Appraisal)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기준액을 평가, 결정함(Assessment)

10) https://www.oregon.gov/DOR/programs/gov-research/Documents/publication-or-pts_303-405_2017-18.pdf

※ 기존 평가 가치 대비 실제 거래 가액에 대한 통계조사 및 매년 선정된 지역 중 약 1/10에 해당하는 부동산 방문 평가(매년 1. 1. 기준)

나) 조세구역, 영역의 구분

- 조세구역(taxing district) : 각 지방정부(city, county, town, special district)는 구역 내 기업 등에 대한 재산 평가
- 조세코드 영역 : 각 조세구역이 중복되거나 조합될 수 있음, 하나의 재산이 여러 과세 구역에 포함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Washington County의 경우: 20만개 부동산, 58개 과세 지역, 281개 세금 코드 지역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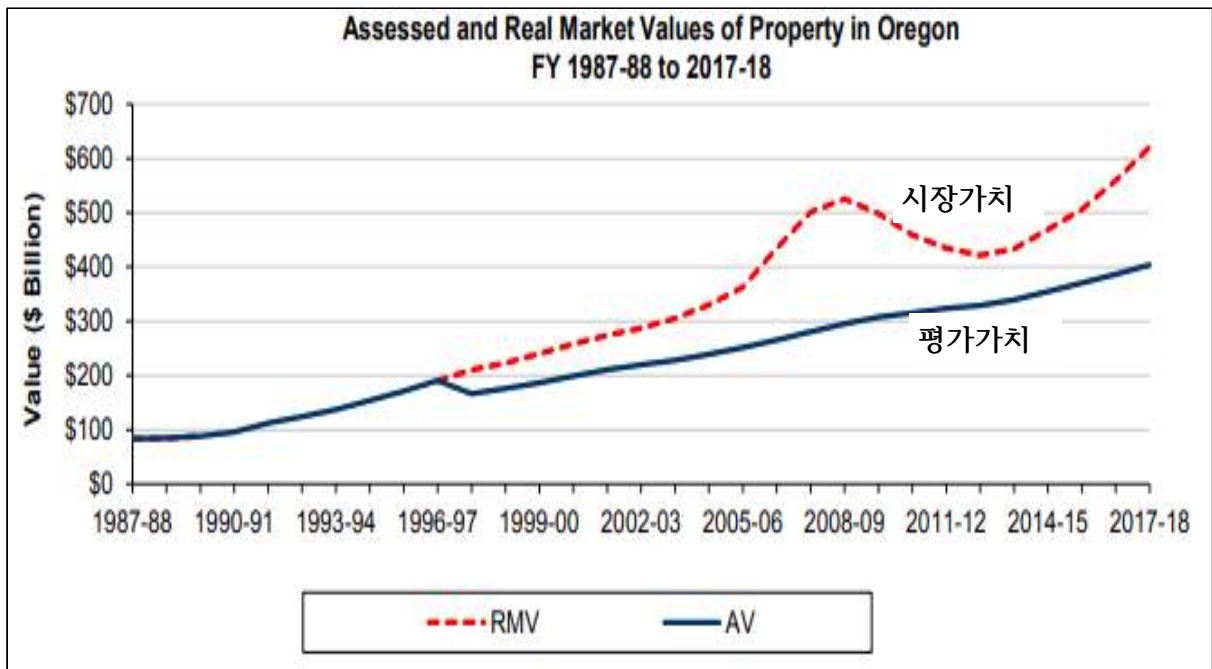
<Lewis & Clark County 조세 구역별 세율 내역>

Lewis & Clark County Tax Rate Detail for Tax Area 051.62 (Rates on \$1,000 assessed valuation.)				
Governmental Entity/ District	Schools	General Govern.	Capital Bonding	Total
Country Government L&C Co.		2.6576	0.2377	2.8953
Education Service Dist Regional	0.1538			0.1538
Community College	0.2828		0.2290	0.5118
School—Medlar #23 (K-12)	6.1930		1.8172	8.0102
Water Supply District				0.0000
Sanitary District—Sewer				0.0000
Fire and Rescue		1.7752	0.0513	1.8265
Parks & Rec Dist – Columbia		1.3073	0.1563	1.4636
City – Southville		3.5282	0.4454	3.9736
Port District/ Airport		0.0701	0.0000	0.0701
Regional Government/ Zoo		0.0966	0.1934	0.2900
Regional Transportation Auth.			0.1080	0.1080
Total Rate	6.6296	9.4350	3.2383	19.3029
Tax Code Area				
Total Assessed Value	\$105,127,917			

다) 오리건 주의 재산세 시스템의 특징(Measure 5, Measure 50)¹¹⁾

11) <https://www.oregon.gov/DOR/programs/property/Documents/Basic-LBL-2019-slides-for-print.pdf>
https://www.oregon.gov/DOR/programs/gov-research/Documents/publication-or-pts_303-405_2017-1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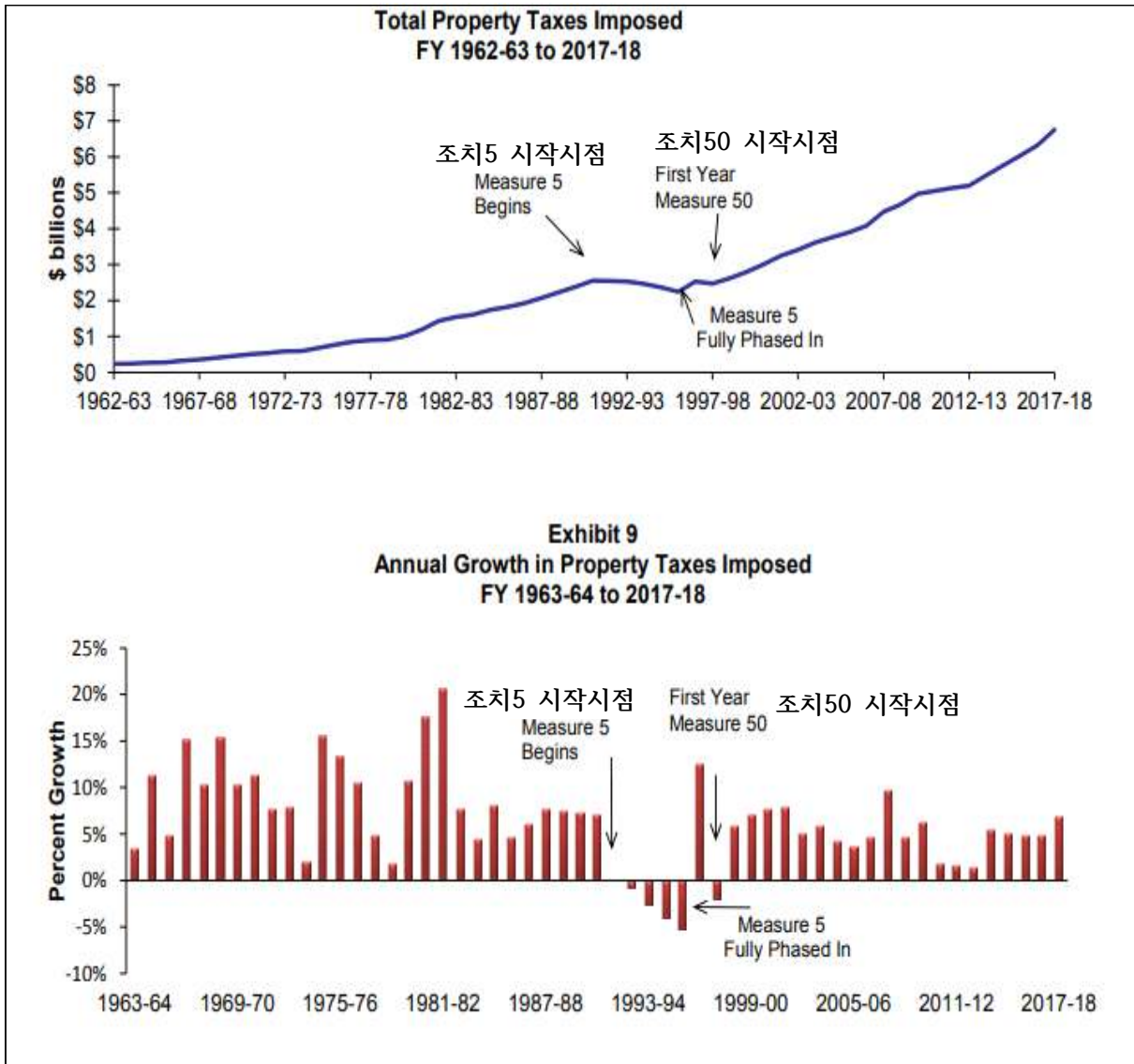
- (1) Measure 5(1995, 오리건 헌법 제11조, Section 11b): 오리건 주는 국민투표로 재산세율을 영구요율(permanent rate)로 하는 제도 채택
- 일반 재산세의 경우 총액이 1%(실제 시장 가치 1,000달러당 10달러)로 제한되며, 학교의 경우 재산세의 0.5%(평가액 1,000달러당 5달러)감면
- (2) Measure 50(1997, 오리건 헌법 제14조, 제11조): 재산 평가액은 실제 시장 가치(RMV)와 전년도 평가액 대비 최대 평가액(MAV, 전년 대비 3%이내 상승가능)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짐
- 최대 평가 가치는 총 실제 시장 가치의 약 79%임
- 실제 시장가치와 평가가치 상승 추세



(3) Measure 5, 50 조치 결과

- 오리건 주는 1992-1993년도 전체 주중에서 14번째로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었으나, 이후 31위로 떨어짐
- 조치 이전 오리건 주는 K-12학교(유치원~고등학교)에 대해 30퍼센트를 지원했으나, 조치 이후에 오리건 주의 70퍼센트로 증가함
- 주 전체에 걸쳐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평준화에 도움

- 1962년~2018년 오리건 주 재산세 부과액, 성장률(조치 5, 50의 영향)



4) 부동산 양도세 또는 상속세(Estate transfer tax or inheritance tax)

- 가) 2012. 1. 1.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inheritance tax), 이후 사망한 경우 양도세(Estate transfer tax)임
- 나) 자산이 상속인과 수혜자에게 양도 될 때 부과되며, 부동산 소유주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다) 납부대상: 사망자의 부동산 총 가치(오리건 주 내)가 \$1,000,000 이상인 경우

5) 소비세 (Exercise Tax)

가) 마리화나 재배, 판매세

- 오리건 주는 2014. 11. 마리화나 판매 여부에 대한 법안 투표 결과(Measure 91, 56% 찬성)에 따라 2015년부터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 보유가 합법화되었음
- 마리화나세: 재배자는 마리화나 꽃 1온스당 35달러, 잎 1온스당 10달러, 미성숙 식물 1개당 5달러 납부, 소비세는 17%임
- 징수된 세수 분배: 학교에 40퍼센트, 정신건강 알콜중독과 마약 서비스에 20%,주 경찰에 15%, 시티에 10퍼센트, 카운티에 10퍼센트, 오레곤 보건 당국에 5퍼센트씩 분배

라. 오리건 주 조세의 특징

1) Home Rule 존중

가)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홈룰(Home Rule)을 존중

- (1) 오리건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가치에 따라 1973년 주정부 의회는 각 지방정부가 개별 관심 사안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2)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존중, 주정부는 기본적인 공공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입하기 꺼려함, 이후 공공안전 서비스와 관련한 연방 자금이 필요한 지방정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법 개정(ORS 368.706-708)

나) Home Rule 존중의 구체적 사례 (조세, 수수료 부과와 관련)

- (1) 2018. 5. 타이거드(TIGARD)시는 재산세 세율 상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 현재 재산세 세율: 부동산 평가가치의 천달러당 2.51달러로 근처 비버튼의 경우 4.38달러, 힐즈보로의 경우 3.66달러에 비해 낮은 세율임
 - 세율 인상의 필요성: 지난 10년간('08~'17년) 타이거드 시의 인구는 9.7% 증가(46천명→ 51천명)한 반면, 시 직원과 경찰서 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공원, 도로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안전문제 발생함
 - 세율 인상액 및 목적: 천달러당 1.18달러를 추가로 부과하여 지역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찰관 추가 배치, 도서관, 공원의 유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활동, 이벤트 확대

- 2018. 5월 주민투표 결과 부결, 시는 예산삭감 준비

(2) 2017, 그리섬(Gresham)시 의회는 주거용 공과금 추가 부과 결정

- 2017. 5. 시의회 위원회는 경찰, 소방, 공원 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5년간 ('19 ~'23년) 1가구당 7.56 달러의 공과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결정

- 징수된 수수료의 95%는 경찰과 화재에 사용되고 5%는 공원에 사용

(3) 2018, 워싱턴 카운티 유권자, ESPD(보안관 순찰지구) 찬성투표

- 1988년부터 주민 제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안관 순찰지구(ESPD)를 지속시
킬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 76%의 찬성으로 승인

- 이 지구의 목적은 해당 거주자 1만 명당 1.0명(기존 1만 명당 0.5명)의 경찰관
배치를 목적으로 하여 법 집행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있음

- 이 지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가구당 약 7달러 정도의 비용을 재산세에 추가징수

※ 세금과 수수료 인상관련 유권자 투표 필요 여부

- 세금인상: 일반세금의 경우 유권자 과반수 투표, 특별세금(학교나 특별구에
서 부과하는 세금, 특정 목적을 위한 세금)의 경우 유권자 2/3 투표로 승인
- 수수료 인상: 일반적으로 지방 의회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 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수수료 변경 시민 발의안의 경우 유권자
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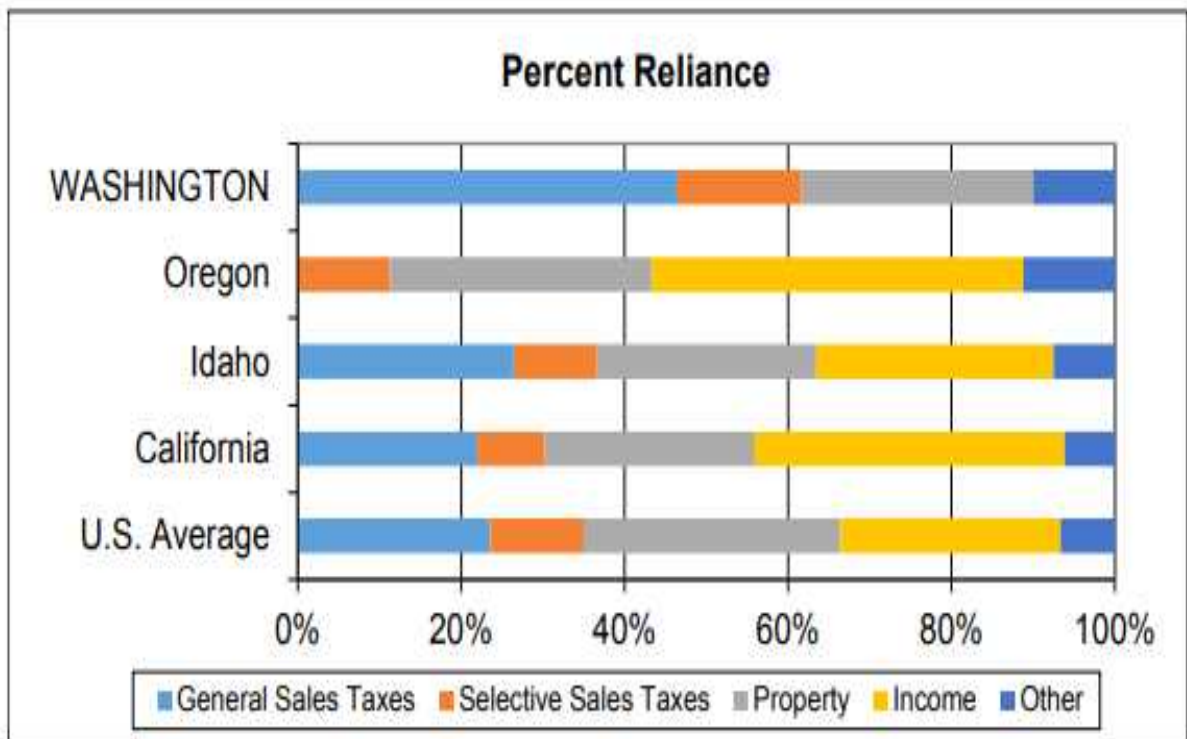
4. 워싱턴 주 조세제도

워싱턴 주는 1930년 대공황때까지는 재산세가 주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였음, 이후 1935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35)에 따라 워싱턴 주는 판매세 등
소비세에 집중하기 시작했음, 현재 워싱턴 주는 주 전체 세입의 원천 중 판매세
부분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¹²⁾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 정책연구소(ITEP)'의 최근 보고서¹³⁾에

12) 법인에게 법인의 소득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총 영수증 세금(Gross receipts tax)을 부과, 총
영수증 세금은 판매세와 비슷하나 제품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판매자에게 부과됨

따르면 워싱턴주 저소득층(연소득 24,000달러 이하)은 소득의 17.8%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중산층(연소득 70,000달러~116,000달러)의 경우 소득의 9.2%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부유층(연소득 54만 달러 이상)은 고작 3%에 그쳐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률이 부유층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높았고, 이는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함, 하지만 워싱턴 주법은 주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소득세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워싱턴주와 인근 주, 미국 평균 조세 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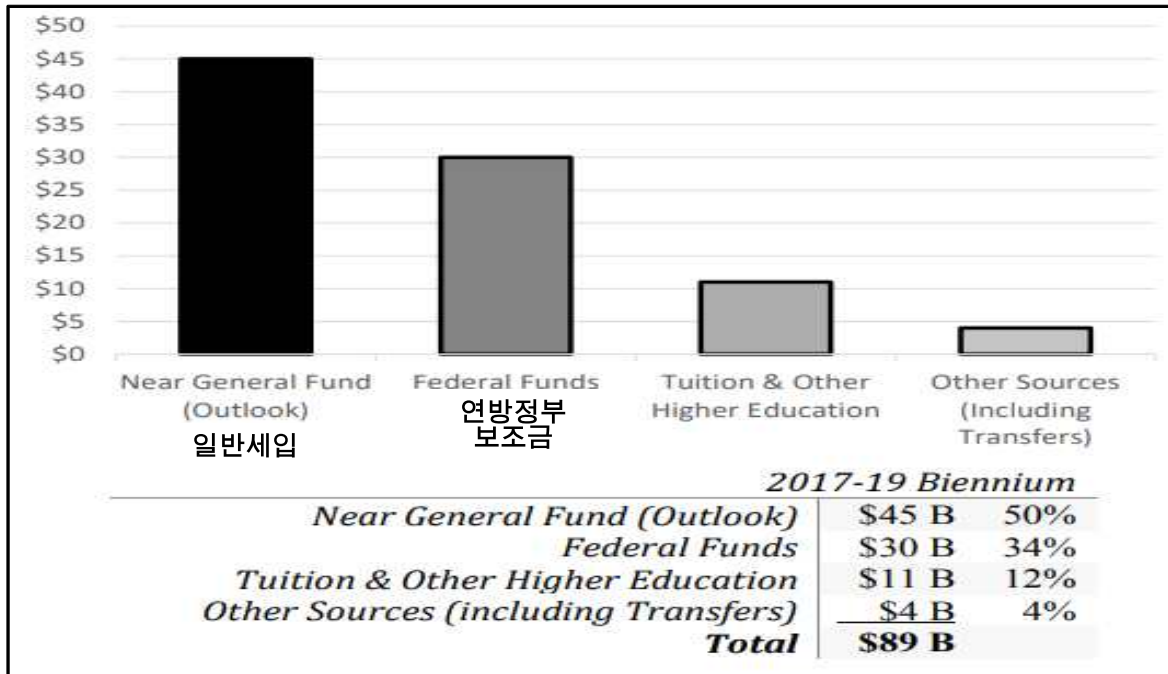
- ▶ General Sales Taxes: 소매, 판매세, 기업 총수입세 포함
- ▶ Selective Sales Taxes: 가솔린, 주류, 담배 및 공공요금 포함
- ▶ other: 자동차 면허 및 기타 모든 세금 포함

출처 :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Reports/Comparative/Comparative_2016.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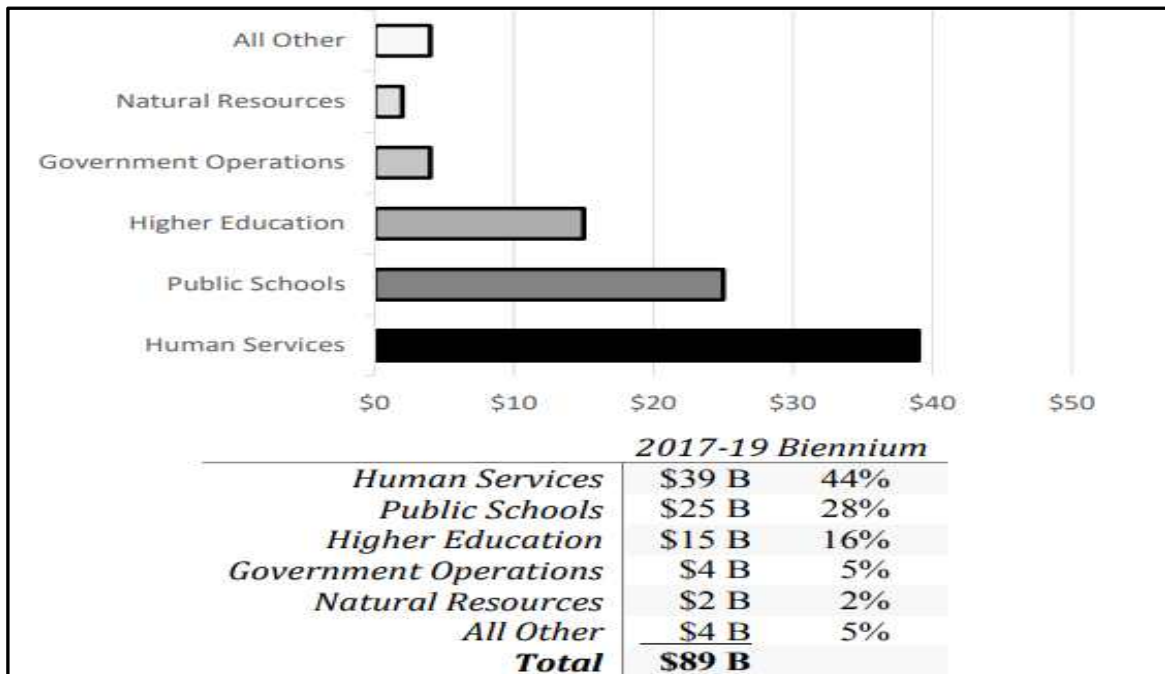
가. 2017~2019 워싱턴주의 세입, 세출

- 1) 세입: 세금 등 일반세입이 50%, 연방정부 보조금 34%, 기타1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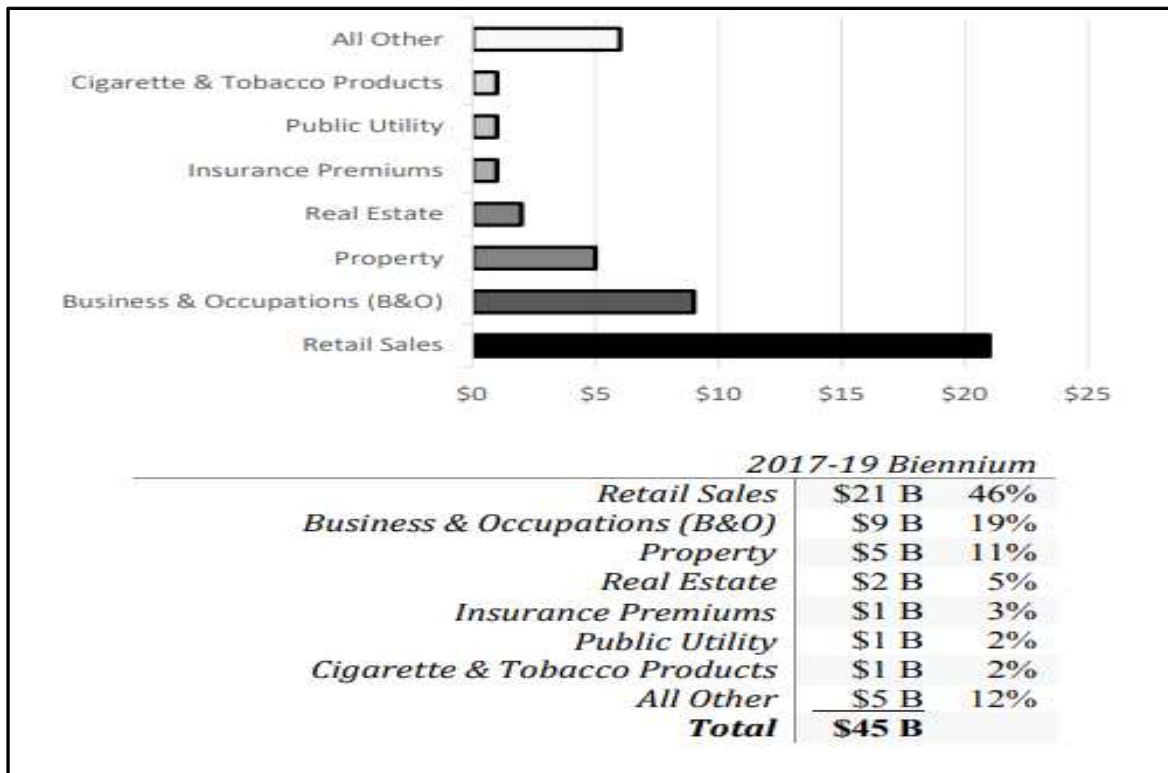
13) 출처 <https://itep.org/washington/> 2019.4.20.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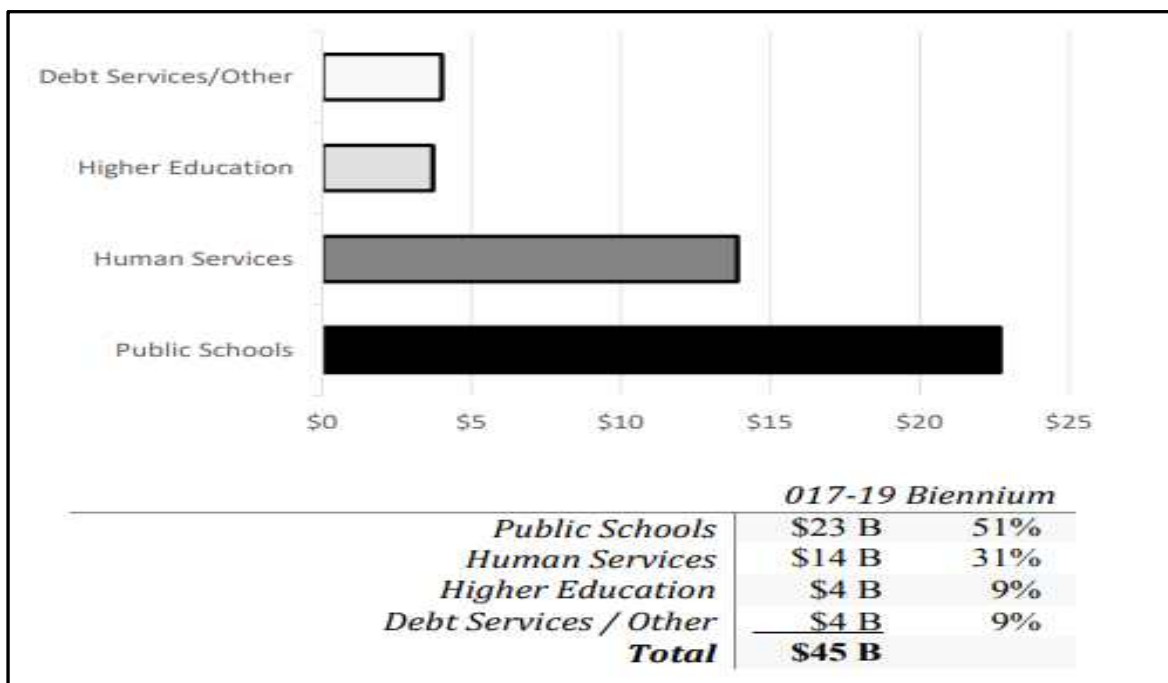
2) 세출구성: 의료 및 공공 지원 등 인적 서비스가 44%, 공립학교가 28%, 컬리지 등 고등교육 16%, 기타 12%임



3) 일반세입: 판매세 46%, 총 수입세(B&O) 19%, 재산세 11%, 상속 증여세 5%, 기타 19%임



4) 일반세입의 지출: 일반세입의 51%가 공립교육에 사용되고, 인적서비스에 31%, 고등교육에 9%, 기타 9%에 지출됨



나. 워싱턴 주 조세관련 규정

1) 워싱턴 주 헌법(Oregon Constitution)

가) 제7장(Washington State Constitution Article VII): 모든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의 영토 한도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균일해야 하며 공공 목적으로만 과세 및 징수되어야 함. 재산(property)이라는 단어는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 대상을 의미함

2) 워싱턴 주 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가) Title 82(EXCISE TAXES) 법인 사업세, 판매세, 소비세, 설탕세 등

조항	세목	세목 영문명
chapter 82.04	사업세	Business and occupation tax.
82.08	소매판매세.	Retail sales tax.
82.16	공공세.	Public utility tax.
82.18	고체 폐기물 수집세.	Solid waste collection tax.
82.19	리터세.	Litter tax.
82.21	유해물질세 - 독소관리법 모델	Hazardous substance tax - Model toxics control act.
82.23B	기름 유출 반응세	Oil spill response tax.
82.24	담배에 대한 세금.	Tax on cigarettes.
82.26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	Tax on tobacco products.
82.27	강화된 식용 생선에 대한 세금	Tax on enhanced food fish.
82.29A	리스홀드소비세	Leasehold excise tax.
82.38	연료세법	Fuel tax act.
82.42	항공기 연료세.	Aircraft fuel tax.
82.44	자동차 소비세	Motor vehicle excise tax.
82.45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과세	Excise tax on real estate sales.
82.46	카운티와 도시 - 부동산 매매세	Counties and cities - Excise tax on real estate sales.
82.47	국경지역 자동차 연료와 특별연료세	Border area motor vehicle fuel and special fuel tax.
82.48	항공기 소비세	Aircraft excise tax.

조항	세목	세목 영문명
82.49	선박 소비세	Watercraft excise tax.
82.5	여행 트레일러와 야영객들에 대한 세금	Travel trailers and campers excise tax.
82.64	시럽세	Syrup tax.
82.8	지방옵션 교통세	Local option transportation taxes.
67.28	호텔, 모텔, 숙박시설부담금, 특별소비세	Hotels, motels, special excise tax on charges for furnishing lodging

나) Title 83(ESTATE TAXATION) 증여, 상속세

다) Title 84(PROPERTY TAXES) 재산세

라) Title 36 소득세 부과금지 규정(주, 시, 카운티 등)

다. 워싱턴 주 세목

1) 판매세(Sales Tax): 워싱턴 주에서 판매세는 워싱턴 주 일반세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주된 수입원임, 2015년 워싱턴 주 판매세 세율은 6.5%, 지방정부 판매세율은 평균 2.42%로 이를 합하면 약 8.92%임

- 2015년 워싱턴주와 인근 주의 판매세율¹⁴⁾

주명	주 판매세	평균 지방정부 판매세	합계
워싱턴 주	6.50%	2.42%	8.92%
아이다호 주	6.00%	0.03%	6.03%
네바다 주	6.85%	1.13%	7.98%
오리건 주	없음	없음	없음

2) 소득세(Income Tax): 워싱턴주는 소득세를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주법으로 규정되어 있음(RCW 36.65.030: 소득세 부과금지 규정)

14) 출처 : The Tax Foundation, "State and local sales tax rates, 2017", 방문 2019.4.1.

- 3) 재산세(Property Tax): 워싱턴 주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지방정부 (39개 카운티)에서 부과함
- 가) 부과 대상 주거용 부동산 평가: 부과대상 부동산은 토지, 토지 개선, 구조물 및 구조물에 부착된 특정 장비가 포함, 카운티 내 평가사가 부동산 시장가격을 조사, 실제 시장가격의 100%에 대해 재산세 부과
- 나) 세율 책정 방식: 예산기반 시스템하에 다음 해에 징수할 재산세액을 책정하여 재산세 세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나 연간 인상율은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각각의 조세구역¹⁵⁾별) 개별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이상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음, 2017년 평균 재산세 부담금은 재산 시장가치 \$1,000당 \$11.20였음, 이중 정규 재산세율은 \$4.85, 유권자인정 추가부담율은 \$4.30, 주립 학교부담금율은 \$1.89였음
- 다) 주된 사용처: 재산세의 약 55%가 학교 재정에 사용되고 도로 등에 15%, 소방, 향만, 도서관 등에 10% 가량 사용됨(2017년 기준)
- 라) 특이점: 2017년 워싱턴 주는 공립학교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Engrossed House Bill (EHB) 2242 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을 통해 학교부담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 예산을 예산 기반 시스템에서 요율 기반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학교 부담금 재산세 세율을 재산 시장가치 \$1,000 당 \$2.70으로 고정시킴(2019년에는 재산세를 낮추는 법안인 ESSB 6614에 따라 \$1,000 당 \$2.40로 변경) 2021년 이후에는 예산기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건임¹⁶⁾
- 4) 상속세, 상속 재산세(Estate and inheritance taxes): 사망한 개인의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 재산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부과됨,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자에게 분배전에 부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납부함

15) 조세구역(taxing districts): RCW 84.04.120에서 규정, 주 및 모든 카운티, 시, 읍, 향만구, 학구, 도로 지구, 대도시 공원 구역, 지역 교통 당국, 물 세수 지구 또는 기타 시 법인이 과세권한을 가짐

16) 출처: 워싱턴 재무국 <https://dor.wa.gov/get-form-or-publication/publications-subject/tax-topics>, 2019. 4. 20. 방문

- 2016년 워싱턴 주, 인근 주 상속재산세 세율¹⁷⁾

주명	면세점	최저세율	최고세율
워싱턴 주	\$2,078,000	10%	20%
아이다호 주	없음		
네바다 주	없음		
오리건 주	\$1,000,000	10.0%	16%

5)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 매각으로 거둬들이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종의 양도소득세임, 자본자산이란 주식, 기업, 토지 소포, 주택, 개인 물품 등이 있음, 자본 이득은 연방 수준과 주 수준 모두에서 과세됨.

- 2015년 워싱턴 주와 인근 주의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¹⁸⁾

주명	주 양도세 (최고세율)	지방정부 양도세 (최고세율)	합계
워싱턴 주	없음	25%	25%
아이다호 주	7.4%	22%	29.4%
네바다 주	없음	25%	25%
오리건 주	9.9%	21.1%	31%

6) 기업 총 영수증세(Gross Receipts tax, Business & Occupation tax): 기업의 소득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판매세와 비슷하나 제품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판매자에게 부과됨

가) 업종별 세율

업종별(B&O classification)	Rate
소매(Retailing)	0.471%
도매(Wholesaling)	0.484%
제조(Manufacturing)	0.484%
서비스업(Service & other activities)	1.5%

17) 출처: Tax Foundation, "Facts and Figures 2015: How does your state compare?" 방문 2019. 4. 20

18) 출처 : The Tax Foundation, "The high Burden of State and Federal Capital Gains Tax Rates", 방문 2019.4.1

나) 총 영수증 세금에 대한 찬반¹⁹⁾: 주차원에서 총 영수증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5곳으로 기업의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함

주명	총영수증세 명칭	세율		
		단계	최저	최고
워싱턴 주	Business&Occupation(B&O)Tax	35	0.13%	3.3%
델라웨어 주	Gross Receipts Tax	54	0.0945%	0.7468%
오하이오 주	Commercial Activity Tax	1	0.26%	0.26%
텍사스 주	Franchise (Margin) Tax	3	0.331%	0.75%
네바다 주	Commerce Tax	27	0.051%	0.331%

- 찬성: 세금기반이 넓고 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기업에 대한 소득세보다 관리 및 계산이 간단하고 불경기에도 안정적인 세수입
- 반대: 기업간 거래가 면제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상품에 대해 중복과세를 의미(세금 pyramiding), 상품의 생산은 크지만 이익마진이 작은 기업에게 불리하여 공정성이 결여, 소비자와 근로자에게로 세금 전가가가능성이 높음

7) 기타 소비세(Exercise Tax):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로 간주됨, 대부분의 경우, 소비세는 품목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납부하고, 그 비용은 판매가격에 포함됨.

• 2017년 워싱턴주와 인근 주의 연료소비세율(갤런당 cents)²⁰⁾

주명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가소홀(Gasohol)		
	소비세	기타	합계	소비세	기타	합계	소비세	기타	합계
워싱턴 주	49.4¢	0¢	49.4¢	49.4¢	0¢	49.4¢	49.4¢	0¢	49.4¢
아이다호 주	32¢	1¢	33¢	32¢	1¢	33¢	32¢	1¢	33¢
네바다 주	24¢	0.805¢	24.805¢	27¢	0.75¢	27.75¢	24¢	0.805¢	24.805¢
오리건 주	30¢	0¢	30¢	30¢	0¢	30¢	30¢	0¢	30¢

19) 출처: <https://taxfoundation.org/gross-receipts-tax/> 총 영수증 세금의 매력에 대한 저항 : 비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0) 출처 : Tax Policy Center, “State Motor Fuels Tax Rates 2013-2017”방문 2019.4.1

- 2017년 워싱턴주와 인근 주의 담배소비세율(1갑당 cents)²¹⁾

주명	세율	순위(50개주)
워싱턴 주	302.5 ¢	8
아이다호 주	57 ¢	45
네바다 주	180 ¢	19
오리건 주	132 ¢	30

5. 연방정부 보조금(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가. 미국보조금의 역사

- 1) 연방보조금의 기능: 20세기 초 이전까지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주정부가 국방, 대외 관계, 법원,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하였음, 이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강화, 소득세 징수로 수입이 늘어남
- 2) 연방보조금의 증가: 연방정부가 공공복지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연방 예산 총 지출의 9%까지 증가함
- 3) 연방 보조금 지출 증가의 원인: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Great Recession, December 2007-June 2009)의 제정에 따라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증가함,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은 1980년대 이후 건설, 경제 개발 등에서 사회복지, 주택 지원 등으로 초점이 변경됨

- 1990~2018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방정부에 지급한 교부금 ²²⁾

(단위: 백만달러)

회계년도	총액	건강	소득보장	교통	교육	공동체, 지역 개발	기타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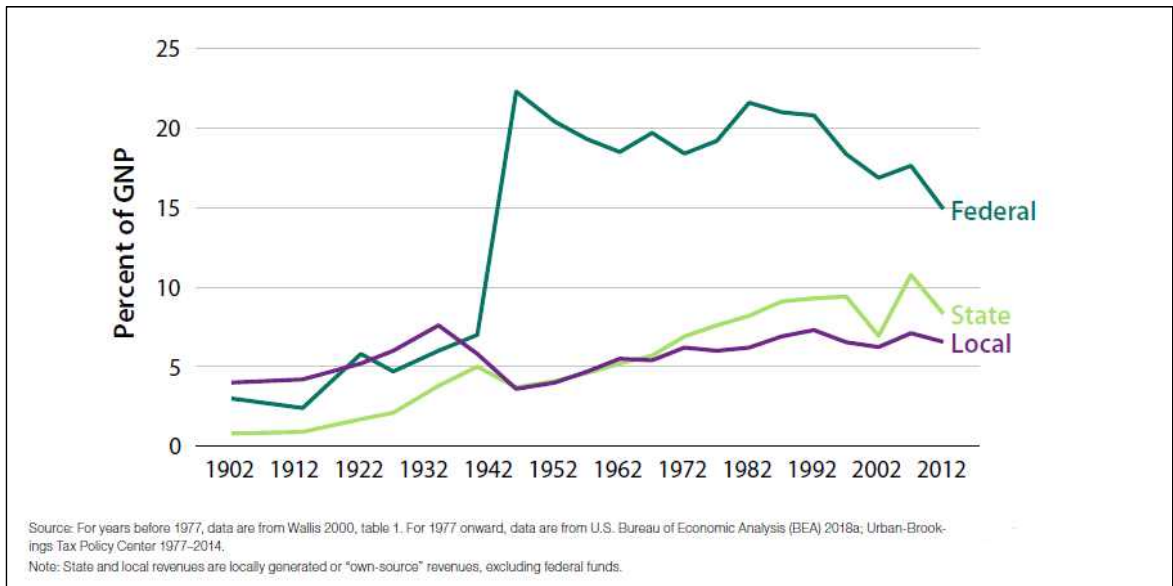
21) 출처 : Tax Policy Center, “State Cigarette Taxes 2017” 방문 2019.4.1

22) 출처: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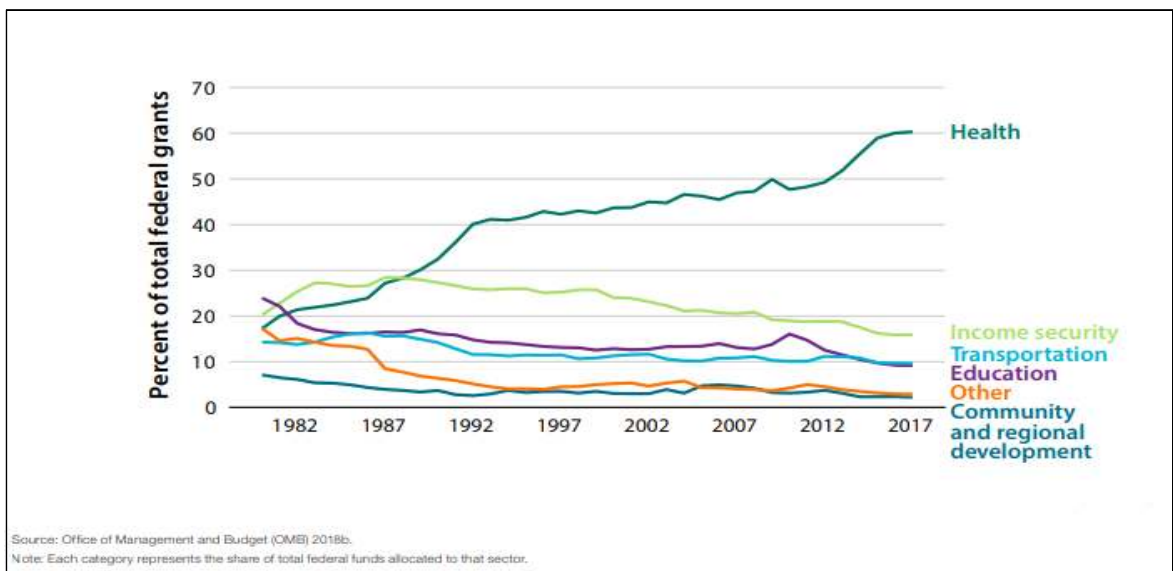
회계년도	총액	건강	소득보장	교통	교육	공동체, 지역 개발	기타
2018	727,986	433,436	111,321	64,356	63,776	31,916	23,181
2017	674,700	406,946	107,400	64,783	61,553	14,797	19,221
2016	660,818	396,666	104,769	63,861	60,867	15,298	19,357
2015	624,354	368,026	101,082	60,831	60,527	14,357	19,531
2014	576,965	320,022	100,869	62,152	60,485	13,232	20,205
2013	546,171	283,036	102,190	60,518	62,690	16,781	20,956
2012	544,569	268,277	102,574	60,749	68,126	20,258	24,585
2011	606,766	292,847	113,625	60,986	89,147	20,002	30,159
2010	608,390	290,168	115,156	60,981	97,586	18,908	25,591
2009	537,991	268,320	103,169	55,438	73,986	17,394	19,684
2008	461,317	218,025	93,102	51,216	58,904	19,221	20,849
2007	443,797	208,311	90,971	47,945	58,077	20,653	17,840
2006	434,099	197,347	89,816	46,683	60,512	21,285	18,456
2005	428,018	197,848	90,885	43,370	57,247	20,167	18,501
2000	285,874	124,843	68,653	32,222	36,672	8,665	14,819
1990	135,325	43,890	36,768	19,174	21,780	4,965	8,748

4) 평가: 연방보조금은 2018년 현재 미국 전체 GDP의 3.5%에 해당하는 약 7,000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침체 해결, 주간 불평등 완화, 실업률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음,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이전되는 대부분의 보조금은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 형태로 전환되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반자금으로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촉진이 되고 있음

- 1902 - 2012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세수입현황



• 1980~2017 주요 사업별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나. 연방보조금의 시기별 변천

- 1) 대공황시기(1933년~1940년대): 주정부, 지방정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 긴급구제법 등 많은 보조금제도 신설, 국가적 문제에 주정부가 적극 관여
-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6년~1956년): 연방정부는 공항건설(1946년), 도시재생(1949년), 도시계획(1954년), 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
- 3) 존슨 대통령(1960년~1968년): 의료제도, 초중등교육법을 위해 보조금 지급,

연방정부 정책목표에 참여 유도 강제, 좁게 제한된 범주형 프로그램(문맹 퇴치, 범죄 단속, 저소득층 주택 수리 등)이 대다수를 이룸

- 4) 닉슨 대통령(1968년~1970년대): 129개의 연방 보조금을 6개의 "특수 수익 공유 프로그램" 또는 블록 보조금으로 통합, 고용 및 훈련 지원 블록 보조금과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수익 분배 프로그램이 법제화
- 5) 레이건 대통령(1980년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실질적 감소, 블록 보조금과 AFDC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 1980년말연방 보조금의 수가 다시 증가
- 6) 1990년대~2000년대: 국가의 주요 현금 복지 프로그램인 AFDC의 블록 부여를 포함한 정부간 이전 구조에 큰 변화, 2000년대에 "아동 방치 금지법"과 같은 새로운 교육 책임 요건 제정, 의료제도를 대폭 확대, 환자 보호 및 의료법(ACA)은 71개의 연방 범주형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정부에 인가하거나 개정
- 7) 트럼프 행정부: CDBG,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지역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 특정 중등교육 및 후등교육 보조금, TIGER 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오히려 자금지원이 증가함

다. 보조금의 종류

-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s) : 특정 항목에만 사용, 좁은 범위의 활동으로 제한
 - 홍수완화지원 보조금 (Flood Mitigation Assistance Grants): 홍수완화 보조사업은 1994년에 지정된 국가홍수보험개혁법 (The National Flood Reform Act; NFRA)조항의 일부로 시작되었음, 국가홍수보험개혁법에 의하면 연방긴급사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정부로 하여금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홍수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방정부는 홍수피해경감계획을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에 보조금 요청서를 제출,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된 계

획에 의거하여 홍수완화지원보조금을 지급

가) 사업 범주형 보조금(project categorical grants) : 연방기관의 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에 의해 수여

- 연방학비보조금 (Federal Pell Grants): 연방학비보조금은 사업범주형 보조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등과정 후 교육과정으로의 입문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부금과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연방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학생들은 연방정부학비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총 보조금액은 예상가정분담금, 대학등록비용, 학생등록상태 및 학생의 출석 일수에 의해 결정되고, 학비보조액은 교육부와 의회가 정한 일반화된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되며, 공식에 사용되는 변수는 학생의 수입, 부모의 수입 및 자산, 식구 규모, 중등과정 후 교육기관에 입학한 부모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수 등임

나) 공식 범주형 보조금(formula categorical grants): 법제 또는 행정 규정에 지정된 요소에 따라 배분 (예: 인구, 중간 가계 소득, 1인당 소득, 빈곤 및 주행 마일 수), 공식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큰 편으로 자금의 배분이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투명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전미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학교급식프로그램으로서 공립 및 비영리의 사립학교와 지역 내 유아보육기관에 지원됨, 연방정부 농무부 식품영양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주정부 교육부-지역교육구 (school district)의 연결체계를 갖고 있음, 일반적으로 공립 혹은 비영리의 사립학교 및 유아보육기관이 대상이며 개별 사립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금보조를 제공받거나 보너스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개별 사립학교는 연방정부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점심식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 학생들에게 무료 혹은 감액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함,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1946년 제정된 학교중식급식법

안 (National School Lunch Act) 및 1954년 제정된 아동영양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주정부 내 학생 수, 가계소득 및 가족 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 (Federal Poverty Guideline)에 의해 결정됨

다) 공식-프로젝트 범주형 보조금(formula-project categorical grants) : 사업 범주형 보조금과 공식 범주형 보조금의 중간형태

라) 개방형 보상 범주형 보조금(open-end reimbursement categorical grants) : 공식 범주형 보조금과 유사하며 주별 특정 비율로 배분하며, 주별 경쟁이 없음

2)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가 가장 넓은, 즉, 특정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예방접종지원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영역이 아닌 공중보건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이 그 예임, 일반적으로 포괄보조금은 기존의 범주적 사업을 하나의 포괄적 사업으로 통합한 경우가 많음, 지출의 투명성, 사업목적 달성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많은 재량이 인정되어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세부사업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짐, 특히, 시민참여라는 방법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문제점 및 수요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의 특수한 요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지역공동체개발 포괄보조금: 지역공동체개발 포괄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은 연방정부가 지역공동체의 발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역공동체에 지원하는 유연성이 높은 보조금임, 지방정부 및 단체에 공식에 의거하여 포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재정지원혜택지역 (Entitlement community)과 재정지원비혜택지역 (Non-Entitlement community)으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재정지원혜택지역은 인구 5만명 이상은 대도시 통계지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중심도시와 인구 규모가 20만 명 이상인 자격요건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며 재정지원혜택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지역은 재정지원비혜택지역임, 주택 및 도시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반영한 공식을 사용하여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타 도심지역과 비교했을 때 빈곤정도, 총인구, 주택과밀정도, 노후주택 수, 인구성정정체 등을 반영함, 지역공동체 포괄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참여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빈민가 거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즉, 포괄보조금 신청을 위한 계획서에는 지역공동체 포괄보조금 사용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미팅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계획된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방안, 불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적시에 서면응답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3) 일반 수익공유(General revenue sharing) :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방세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사용

라. 분배방식, 결정과정

- 1) 보조금 운영 프로그램(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발)

가) 1970년대 프로그램: 결과적으로 대상선정을 잘 하지 못하고 제때 지원하거나 빠른 대처는 하지 못했다는 평가(ACIR 1978b).

- 지방 공공 사업 자본 개발 및 투자법(Local Public Works Capit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Act of 1976, LPW)
- 포괄적 고용 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of 1973, CETA)
- 경제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the Antirecession Fiscal Assistance program, ARFA)

나) 2000년대 프로그램

- 일자리 및 성장세 조정법(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JGTRRA) - 한번에 100억 달러를 지급, 추가로 100억 달러의

의료 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현 경제 상황이나 기초적인 국가 재정 능력을 반영하지 했다는 비난을 받음

- 미국회생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the Recovery Act) - 약 2800억 달러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급, 조건없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와 지방에서 일반자금으로 사용, 이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됨

다) 문제점 및 보완노력

- 대부분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이 주 소득 또는 필요 자금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많은 보조금 프로그램은 원조 분배의 기초로서 인구 수에 의존하는데, 이는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제한한다는 미국정부 회계감사원[GAO, 2009A]의 지적
- 연방보조금 프로그램상 주정부 등에 균형잡힌 예산(일정 수준의 지출, MOE)을 요구하는데, 이는 경기침체(실업증가, 소득감소)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짐, 결국 주정부 차원에서 증세, 주정부지출을 삭감하게 되고 이는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침
- MOE(Manage of effort): 연방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주 교육청(SEA)과 지방교육기관(LEA)등은 매년 일정한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지 증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간 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

2) 미국 의회: 연방보조금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달성 목표 설정, 효과성 검토, 보조금 종류 선택, 관련 법률과의 조정, 이행여부 피드백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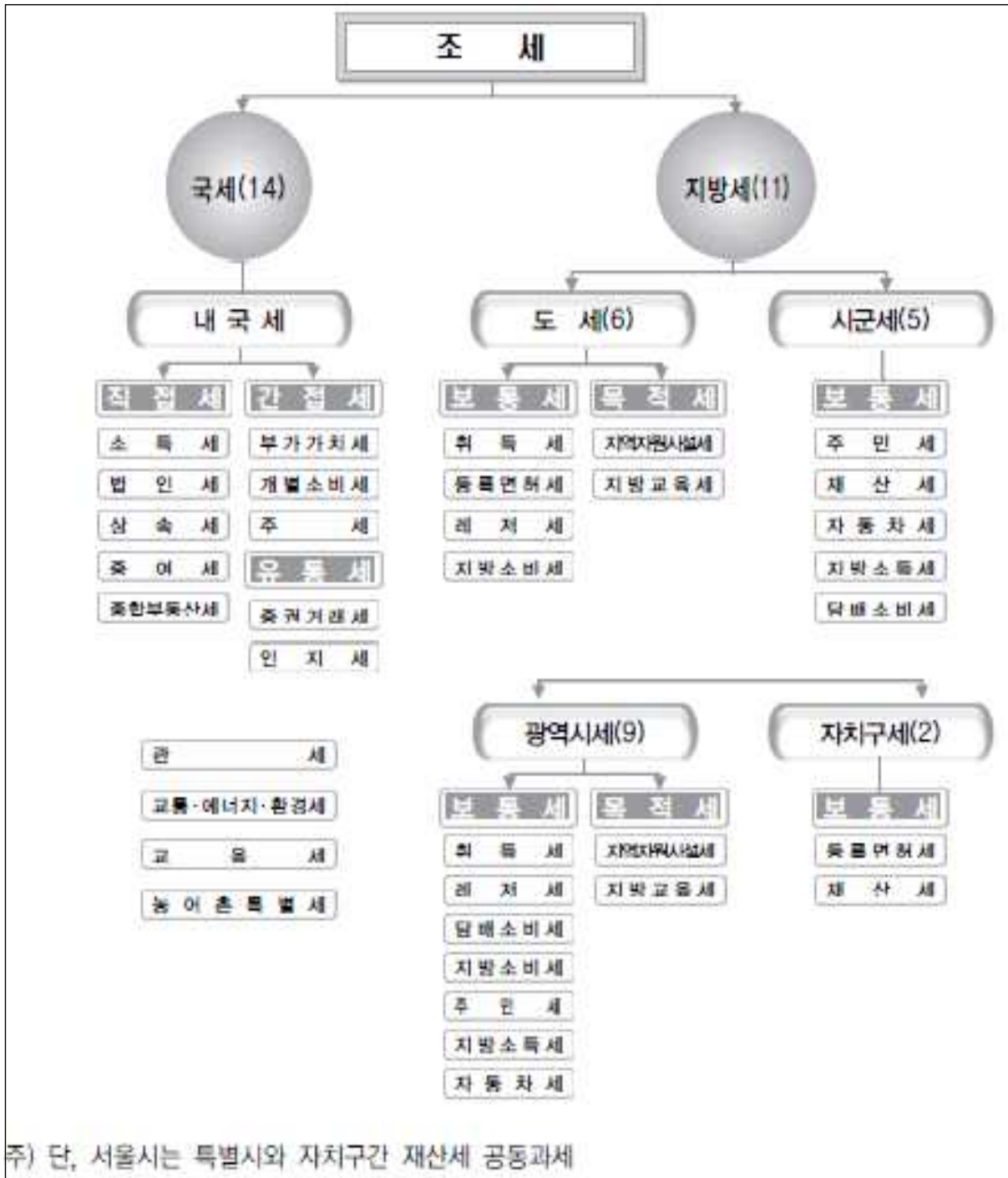
가) 내부요인 : 의회 지도부와 의회 절차, 위원회 시스템의 분산적 성격, 개별 위원들의 배경, 성격, 이념 선호(특히 당 지도부와 분과 소위원회 의장과 고위 소수 당원) 및 관습 등

나) 외부요인 : 유권자 선거구, 조직적 이익집단(특히 전국 도시연맹, 미국 시장총회, 전국헌법회의), 대통령 및 집행부 관계자,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영향력 행사

Ⅲ. 한국의 지방세 제도

1. 한국의 조세 제도

가. 조세 구조



출처: 행정자치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1) 지방세 세목: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전국 평균 46.0%)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방세 세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침, 2018년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7.5% 대 22.5%로 일본,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성질별 지방세 세목

성질별	세 목	비고
계	11세목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균등분)	
소비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보유과세 (재산과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거래과세 (재산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7.5 : 22.5

(단위:억원, %)

구분	210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세	2,030,149 (79.0)	2,019,065 (79.0)	2,065,198 (76.9)	2,178,198 (76.9)	2,425,617 (76.3)	2,510,766 (77.0)	2,681,947 (77.5)
지방세	539,381 (21.0)	537,789 (21.0)	617,225 (23.1)	617,225 (23.1)	755,306 (23.7)	750,239 (23.0)	779,140 (22.5)

- OECD 주요 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율(2016년 기준)

구분	국세	지방세
일본	60.2	39.8
미국	56.7	43.3
영국	94.0	6.0
독일	48.0	52.0
프랑스	70.5	29.5

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제도 개요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1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 조건 부여 가능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는 용도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에 교부세 총액의 75% 이상 사용 규정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후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 교부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 관리, 국가지방협력 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응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로 교부 ▶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등에 따라 산정·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재난 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교부 	소관 부처별 증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성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및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재원 (이전 재원 성격)

• 2018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 이전

(단위: 억원)

구분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961,568	100.0%	459,805	47.8%	501,763	52.2%

2) 지방교부세

가) 교부세 제도의 의의: 국세 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나) 2018년도 보통교부세 동종별 교부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단체수			보통교부세 교부액	보통교부세 지급특례액*	비고(불교부단체)
	계	교부	불교부			
계	174	167	7	421,633	3,063	
특별시	1	-	1	-	1,331	서울
광역시	6	6	-	43,207		
특별자치시	1	1	-	464		
도	8	7	1	58,333	1,464	경기
특별자치도	1	1	-	12,741		
시	75	70	5	158,986	268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하남
군	82	82	-	147,902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단체

* '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불교부단체에 한시 적용하는 특례(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

3) 국고보조금

가)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가위임사무의 시책 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제도로서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

나) 국고보조금의 목적: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협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 근거 규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을 정함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610,786	100	644,322	100	671,375	100	652,044	100	706,631	100
국고보조금	377,463	61.8	414,078	64.3	428,646	63.8	434,868	66.7	472,042	66.8
지방비부담	233,323	38.2	230,24	35.7	242,729	36.2	217,175	33.3	234,589	33.2

2. 서울시 조세 제도

가. 2019 서울시 예산: 서울시 2019년 예산규모는 35조7,416억원(총계임, 순계는 31조8811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음, 일반회계가 24조1,683억원으로 67.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1조5733억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음, 수입 구성은 자체수입이 75.96%, 의존수입이 17.41%,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6.62%임

1) 년도별 서울시 세입예산(총계)

(단위: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255,184	275,038	298,011	318,141	357,416	
일반회계	182,578	191,694	206,398	224,665	241,683	
시세	136,225	141,258	155,554	170,965	177,858	
세외수입	12,830	15,654	14,719	12,851	14,798	
지방교부세	1,007	1,217	1,334	1,434	1,733	
국고보조금	28,522	29,351	30,912	35,449	43,522	
지방채	-	-	-	-	-	
보전수입	3,994	4,214	3,879	3,966	3,772	
특별회계	72,606	83,344	91,613	93,476	115,733	
자체수입	31,188	31,975	31,664	33,149	37,662	
타회계전입금	26,759	32,687	35,984	38,961	41,176	
지방교부세	-	-	-	-	-	
국고보조금	7,389	8,544	11,749	12,829	13,228	
공채및차입금	7,270	10,138	12,216	8,537	23,667	

• 자체수입, 의존수입 수입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55,184	100.00	275,038	100.00	298,011	100.00	318,141	100.00	357,416	100.00
자체수입	207,002	81.12	221,574	80.56	237,921	79.84	255,926	80.44	271,494	75.96
의존수입	40,912	16.03	43,326	15.75	47,874	16.06	53,678	16.87	62,255	17.41
지방채,기타	7,270	2.85	10,138	3.69	12,216	4.10	8,537	2.68	23,667	6.62

2)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액(순액)	228,427	100.0	262,913	100.0	263,017	100.0	313,112	100.0	318,811	100.0
사업비	142,355	62.3	163,792	62.3	163,697	62.2	192,463	61.5	214,000	67.1
사회복지	78,349	34.3	85,120	32.4	87,735	33.4	100,017	31.9	111,574	35.0
도로,교통	18,514	8.1	22137	8.4	17,746	6.7	20,581	6.6	28,947	9.1
공원,환경	17,272	7.6	18653	7.1	17212	6.5	28,265	9.0	23,467	7.4
도시안전	10,656	4.7	12981	4.9	14589	5.5	5,255	1.7	10,200	3.2
문화관광	5,021	2.2	6543	2.5	6291	2.4	5,915	1.9	6,557	2.1
산업경제	4,723	2.1	4934	1.9	5444	2.1	7,320	2.3	7,944	2.5
도시계획및 주택정비	2,216	1.0	4733	1.8	5403	2.1	14,712	4.7	15,069	4.7
일반행정	3,882	1.7	6769	2.6	7315	2.8	7,940	2.5	7,780	2.4
예비비	1,722	0.8	1922	0.7	1962	0.7	2,457	0.8	2,461	0.8
교육청지원	24,523	10.7	28040	10.7	28,149	10.7	33,880	10.8	30,288	9.5
자치구지원	35,023	15.3	41324	15.7	41,124	15.6	50,724	16.2	46,862	14.7
행정운영경비	14,872	6.5	16052	6.1	16769	6.4	17,760	5.7	18,317	5.7
재무활동	11,654	5.1	13705	5.2	13277	5.0	18,284	5.8	9,344	2.9

나. 서울시 재정여건

- 1)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²³⁾는 82.5%(광역시 평균 53.4%), 자체사업²⁴⁾(일반회계) 비중은 53%(광역시 평균 42%), 보조사업²⁵⁾(일반회계) 비중은

23)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 자체예산(지방세+세외수입) 비중

24) 자체사업: 자치단체 총 예산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정책사업중 보조사업 제외)

27.1%(광역시 평균 39.2%), 사회복지²⁶⁾(일반회계) 비중은 34.1%(광역시 평균은 36.8%),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2,279천원(광역시 평균 2,340천원)으로, 재정이 건전하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사업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비중이 낮고, 보조사업 비중이 낮은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보조금이 낮은 영향임

● 재정자립도(일반)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	82.5	53.4	69.2	42.5
최고	82.5 서울본청	63.0 인천 본청	69.2 세종	42.5 제주
최저		44.3 광주 본청		

● 자체사업(일반회계)비중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	53.0	42.0	46.8	33.7
최고	53.0 서울본청	47.1 인천 본청	46.8 세종	36.3 제주
최저		36.5 부산 본청		

● 보조사업(일반회계)비중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	27.1	39.2	35.4	39.8
최고	27.1 서울본청	42.0 대전 본청	35.4 세종	39.8 제주
최저		34.4 인천 본청		

25) 보조사업: 자치단체의 총 예산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자체사업 제외)

26) 사회복지 분야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일반회계)비중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	34.1	36.8	23.6	21.5
최고	34.1 서울본청	36.8 광주 본청	23.6 세종	21.5 제주
최저		29.4 울산 본청		

●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평균	2,279	2,340	4,040	6,366
최고	2,279 서울본청	2,507 광주 본청	4,041 세종	6,366 제주
최저		2,206 인천 본청		

2) 2019년 서울시 예산순액은 31조 2천억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분야의 11조 1천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9%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인 7.7%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의존재원의 비율은 연평균 증가율이 11.1%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년도별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세입, 비율

(단위: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수입	247,914	100.0	264,900	100.0	285,795	100.0	309,604	100.0	333,749	100.0	7.7
자체수입	207,002	83.5	221,574	83.6	237,921	83.2	255,926	82.7	271,494	81.3	7.0
의존재원	40,912	16.5	43,326	16.4	47,874	16.8	53,678	17.3	62,255	18.7	11.1

IV.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제도와 오리건 주, 워싱턴 주의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서울시의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다른 역사적 배경과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이 있어 단순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왔고, 따라서 주정부 간 매우 다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오리건 주의 경우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인근 주인 워싱턴 주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세원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

연방정부의 주된 세원은 소득세이며, 주정부의 주된 세원은 판매세와 소비세(판매세 비중이 높은 주는 소비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주는 판매세의 비중이 낮음),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은 재산세이다. 소득세의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보다 연방정부에서 걷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가 높아지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세가 낮은 다른 주로 이전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회피가 불가능해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지출의 23.8%가 사회보장에 투입되었고, 국방, 보건, 메디 케어 및 소득 보장에 80%이상이 지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큰 부분을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라는 점이 지방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재산세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지방세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주된 세원을 소득세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나 연방정부 수입의 50%이상이 의료,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우도 세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무의 배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가 사무 수행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검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82.5%로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 53.4%에 비해 높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비용의 경우 2013년도에 6조 285억이던 것이 2017년도 8조 7,735억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약 9%로(5년전 비교시 약 45% 증가), 우리시의 자체수입 연평균증가율인 약 7%를 초과하고 있고, 향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5 : 22.5 로 자체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의 경우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취득세 등이 주된 수입원인 현재 상황은 쉽사리 극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위임사업이 대부분으로 서울시 총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구성은 자체수입이 75.96%, 국가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7.41%에 불과하고, 이는 우리시가 지방교부금 불교부대상인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사업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비중이 낮는데, 보조사업 비중이 낮은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보조금이 낮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사업인 사회보장, 메디 케어 사업 등의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정부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당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2016년 주정부의 총 지출대비 주정부자금과 연방정부자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주정부자금이 약 70%, 연방정부자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3) 과세자주권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 실현

오리건 주의 경우 판매세가 없는 대신 개인소득세가 주 세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980년대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많은 주들이 개인소득세 세율을 줄이거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되는 점이다. 오리건 주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은 재산세에서 발생하는 데 조치5, 조치50에 따라 급격하게 세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세목을 신설할 수 있고, 세율을 정할 수 있지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금신설이나 세율상승에 대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세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정부가 살림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부여받아 시행하고 예산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한 세금신설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필요한 분야 지원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리건 주 지방정부 중 그리섬(Gresham)시의 경찰, 소방, 공원요금 충당을 위한 공과금 추가 징수결정(2017.5.), 워싱턴 카운티의 보안관 순찰지구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재산세에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카운티의 보안관 순찰지구는 주민 제안으로 1988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사용료로서 주민들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편익원칙이 적용되고 주민들의 지지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율인상은 주민반발이 크므로 편익원칙이 적용되는 사용료, 수수료의 인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훈, 이선화, 미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행정자치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p3~151, 285~399

행정자치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pp14~62, 230~261

이영희, 주만수, 최병호, 홍서빈,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김승연,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2019

배준식,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2016

서울특별시, 2019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pp19~40

윤태섭, 재정책임성 및 과세자주권 강화를 통한 정부 간 재정 갈등 해결 방안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홍성익, 김유찬,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State Expenditure Report(Fiscal 2015-2017),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s, 2017

Senate Ways and Means Committee, A Citizen's Guide to the Washington State Budget, 2019

Sylvain Leduc and Daniel Wilson, Are State Governments Roadblocks to Federal

Stimulus? Evidence on the Flypaper Effect of Highway Grants in the 2009 Recovery Act, American Economic Journal, 2017

Tracy Gordon, Harnessing the U.S.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for place-Based Assistance in Recession and Recovery,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2018

Robert Jay Dilger, Federal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A Historical Perspective on Contemporary Issues, American National Government, 2018

[인터넷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https://www.irs.gov/>)

미국 정치 디지털 백과사전 (https://ballotpedia.org/Washington_state_budget_and_finances)

조세연구원(<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overview>)

조세연구원(<https://taxfoundation.org/>)

도시연구원(<https://www.urban.org/>)

통계청(<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gov-finances.html>)

오리건주 재무국(<https://www.oregon.gov/dor/Pages/index.aspx>)

워싱턴 주 홈페이지(<https://access.wa.gov/>)

워싱턴주 헌법, 법 (<http://leg.wa.gov/LAWSANDAGENCYRULES>)

워싱턴주 재정현황(<http://www.fiscal.wa.gov/Revenue.aspx>)

워싱턴주 재무국(<https://dor.wa.gov/>)